

# 아크로 드 서초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2-571-1162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4.03.20. 이전부터 계속 거주)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3년	2년	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정	2026.03.20.(금)	2026.03.31.(화)	2026.04.01.(수)	2026.04.02.(목)	2026.04.03.(금)	2026.04.09.(목)	2026.04.10.(금)~ 2026.04.12.(일)	2026.04.20.(월)~ 2026.04.23.(목)

- 주택전시관 운영 안내
  - 사이버 주택전시관(<https://www.acro.co.kr>)을 통해 분양일정 안내,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일반분양 주택전시관 관람은 사이버 주택전시관을 통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접수 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에 한하여 주택전시관 입장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자격확인 서류제출,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사는 사이버 주택전시관 운영으로 인하여 주택전시관 방문 관람은 불가합니다.

##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24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사이버 주택전시관(<https://www.acro.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단, 일부 은행에 한하여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항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3.20.(금)입니다.(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가(2024.03.20.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정	2026.03.31.(화)	2026.04.01.(수)	2026.04.02.(목)	2026.04.03.(금)	2026.04.09.(목)	2026.04.10.(금)~ 2026.04.12.(일)	2026.04.20.(월)~ 2026.04.23(목)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아크로 드 서초 주택전시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크로 드 서초 주택전시관(10:00 ~ 16:00)</li> <li>-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1</li> </ul>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람,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

- ※ (예외1)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시작일이 혼인 전인 경우에는 당첨자발표일 기준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예외2) 2025.03.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3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청약신청자 본인의 재당첨 제한 시작일이 혼인 전인 경우에는 당첨자발표일 기준 본인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당첨 가능합니다.(혼인특례 사용하여 청약신청)
- ※ (예외3)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 및 거주유무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적용되며 그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간	관련 법령
전매제한기간	3년(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거주의무기간	2년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법」 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 (최초 당첨자발표일 2026.04.09.)부터 전매제한은 3년(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까지이나,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거 2년의 거주의무기간이 해당되어 전매 또는 매매 시 규제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건축사업과-5264(2026.03.1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3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 지상 39층 16개동 총 1,161세대(조합 1,098세대, 보류지 7세대 포함) 중 일반분양 56세대  
[특별공급 26세대(기관추천 5세대, 다자녀가구 5세대, 신혼부부 10세대, 노부모부양 1세대, 생애최초 5세대)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sup>2</sup>,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비고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497	01	059.3700	59	59.3700	17.2000	76.5700	62.2500	138.8200	26.4400	2	-	-	-	-	-	-	2	-	1단지
	02	059.3700A	59A	59.3700	17.2400	76.6100	62.8400	139.4500	26.4400	47	4	5	7	1	4	21	26	7	2단지
	03	059.2100C	59C	59.2100	17.6900	76.9000	62.0800	138.9800	26.5500	7	1	-	3	-	1	5	2	3	1단지
	합계									56	5	5	10	1	5	26	30	10	-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사이버 주택전시관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 59, 59A타입은 1,2단지 같은 주택형(전용면적 기준)이더라도 공용면적과 계약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 ※ 기존 승인 및 설계도서 상 59A 타입 표기를 청약홈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경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9A(1단지)→59로 표기, 59A(2단지)→59A로 통합 표기
- ※ 주택의 표기방식은 종전(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sup>2</sup>) × 0.3025 또는 공급면적(m<sup>2</sup>) ÷ 3.3058)
- ※ 상기 면적 표현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제곱미터(m<sup>2</sup>)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림방식으로 인해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과의 합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벽체, 주동출입구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을 포함한 기타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주동 타입별로 공유하는 단위세대 주거공용 면적끼리 묶어, 타입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재분배 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 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 63조(관리처분의 방법 등) 1항 6호 기준으로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대지지분 및 대지지분의 합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 하였으나, 일부 오차나 균등한 배분이 불가능한 경미한 면적은 특정 세대 등에 임의로 배분하였습니다.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각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세대벽체면적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당 사업지의 대지면적이 인접건물 대지의 영향으로 대지면적이 변동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서울시 인허가 기준에 따른 발코니 변화로 인해, 같은 주택형이라도 발코니 설치 내용 및 서비스 면적이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분(약식표기)		59A (2단지)	59C (1단지)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	1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	1
	장애인	1	-	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근로자	1	-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해당시·도(서울특별시) 거주자 (50%)	3	-	5
	기타지역(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50%)	2	-	
신혼부부 특별공급		7	3	1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	1
생애최초 특별공급		4	1	5
<b>합계</b>		<b>21</b>	<b>5</b>	<b>26</b>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국토교통부 공문(주택기금과-1589)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9조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호	층 구분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 (20%)	중도금(60%)						잔금 (20%)	
						대지비	건축비	계		1회차(10%)	2회차(10%)	3회차(10%)	4회차(10%)	5회차(10%) * 자납	6회차(10%) * 자납		
										계약시	2026.08.25.	2027.01.25.	2027.06.25.	2027.11.25.	2028.04.25.		2028.09.25.
059.3700	59	2	101-102	1층	1	1,487,169,450	285,380,550	1,772,550,000	354,510,000	177,255,000	177,255,000	177,255,000	177,255,000	177,255,000	177,255,000	354,510,000	
			101-201	2층	1	1,505,291,850	288,858,150	1,794,150,000	358,830,000	179,415,000	179,415,000	179,415,000	179,415,000	179,415,000	179,415,000	179,415,000	358,830,000
059.3700A	59A	47	201-101	1층	1	1,489,048,810	285,741,190	1,774,790,000	354,958,000	177,479,000	177,479,000	177,479,000	177,479,000	177,479,000	177,479,000	354,958,000	
			201-201	2층	1	1,514,042,620	290,537,380	1,804,580,000	360,916,000	180,458,000	180,458,000	180,458,000	180,458,000	180,458,000	180,458,000	180,458,000	360,916,000
			201-202	2층	1	1,509,042,180	289,577,820	1,798,620,000	359,724,000	179,862,000	179,862,000	179,862,000	179,862,000	179,862,000	179,862,000	179,862,000	359,724,000
			201-301	3층	1	1,527,785,440	293,174,560	1,820,960,000	364,192,000	182,096,000	182,096,000	182,096,000	182,096,000	182,096,000	182,096,000	182,096,000	364,192,000
			201-302	3층	1	1,527,785,440	293,174,560	1,820,960,000	364,192,000	182,096,000	182,096,000	182,096,000	182,096,000	182,096,000	182,096,000	182,096,000	364,192,000
			201-401	4층	1	1,539,036,430	295,333,570	1,834,370,000	366,874,000	183,437,000	183,437,000	183,437,000	183,437,000	183,437,000	183,437,000	183,437,000	366,874,000
			201-402	4층	1	1,537,786,320	295,093,680	1,832,880,000	366,576,000	183,288,000	183,288,000	183,288,000	183,288,000	183,288,000	183,288,000	183,288,000	366,576,000
			201-501	5층	1	1,548,408,060	297,131,940	1,845,540,000	369,108,000	184,554,000	184,554,000	184,554,000	184,554,000	184,554,000	184,554,000	184,554,000	369,108,000
			201-502	5층	1	1,547,157,950	296,892,050	1,844,050,000	368,810,000	184,405,000	184,405,000	184,405,000	184,405,000	184,405,000	184,405,000	184,405,000	368,810,000
			201-601	6층	1	1,556,529,580	298,690,420	1,855,220,000	371,044,000	185,522,000	185,522,000	185,522,000	185,522,000	185,522,000	185,522,000	185,522,000	371,044,000
			201-602	6층	1	1,555,908,720	298,571,280	1,854,480,000	370,896,000	185,448,000	185,448,000	185,448,000	185,448,000	185,448,000	185,448,000	185,448,000	370,896,000
			201-701	7층	1	1,564,651,100	300,248,900	1,864,900,000	372,980,000	186,490,000	186,490,000	186,490,000	186,490,000	186,490,000	186,490,000	186,490,000	372,980,000
			201-702	7층	1	1,564,651,100	300,248,900	1,864,900,000	372,980,000	186,490,000	186,490,000	186,490,000	186,490,000	186,490,000	186,490,000	186,490,000	372,980,000
			205-101	1층	1	1,482,798,260	284,541,740	1,767,340,000	353,468,000	176,734,000	176,734,000	176,734,000	176,734,000	176,734,000	176,734,000	176,734,000	353,468,000
			205-201	2층	1	1,507,162,820	289,217,180	1,796,380,000	359,276,000	179,638,000	179,638,000	179,638,000	179,638,000	179,638,000	179,638,000	179,638,000	359,276,000
			205-301	3층	1	1,520,914,030	291,855,970	1,812,770,000	362,554,000	181,277,000	181,277,000	181,277,000	181,277,000	181,277,000	181,277,000	181,277,000	362,554,000
			205-401	4층	1	1,530,914,910	293,775,090	1,824,690,000	364,938,000	182,469,000	182,469,000	182,469,000	182,469,000	182,469,000	182,469,000	182,469,000	364,938,000
			205-501	5층	1	1,539,657,290	295,452,710	1,835,110,000	367,022,000	183,511,000	183,511,000	183,511,000	183,511,000	183,511,000	183,511,000	183,511,000	367,022,000
			205-601	6층	1	1,548,408,060	297,131,940	1,845,540,000	369,108,000	184,554,000	184,554,000	184,554,000	184,554,000	184,554,000	184,554,000	184,554,000	369,108,000
			205-701	7층	1	1,557,158,830	298,811,170	1,855,970,000	371,194,000	185,597,000	185,597,000	185,597,000	185,597,000	185,597,000	185,597,000	185,597,000	371,194,000
			206-101	1층	1	1,478,418,680	283,701,320	1,762,120,000	352,424,000	176,212,000	176,212,000	176,212,000	176,212,000	176,212,000	176,212,000	176,212,000	352,424,000
			206-201	2층	1	1,503,420,880	288,499,120	1,791,920,000	358,384,000	179,192,000	179,192,000	179,192,000	179,192,000	179,192,000	179,192,000	179,192,000	358,384,000
			206-301	3층	1	1,516,542,840	291,017,160	1,807,560,000	361,512,000	180,756,000	180,756,000	180,756,000	180,756,000	180,756,000	180,756,000	180,756,000	361,512,000
			206-401	4층	1	1,525,914,470	292,815,530	1,818,730,000	363,746,000	181,873,000	181,873,000	181,873,000	181,873,000	181,873,000	181,873,000	181,873,000	363,746,000
206-501	5층	1	1,534,656,850	294,493,150	1,829,150,000	365,830,000	182,915,000	182,915,000	182,915,000	182,915,000	182,915,000	182,915,000	182,915,000	365,830,000			
206-601	6층	1	1,542,786,760	296,053,240	1,838,840,000	367,768,000	183,884,000	183,884,000	183,884,000	183,884,000	183,884,000	183,884,000	183,884,000	367,768,000			
206-701	7층	1	1,550,908,280	297,611,720	1,848,520,000	369,704,000	184,852,000	184,852,000	184,852,000	184,852,000	184,852,000	184,852,000	184,852,000	369,704,000			

			207-102	1층	1	1,479,047,930	283,822,070	1,762,870,000	352,574,000	176,287,000	176,287,000	176,287,000	176,287,000	176,287,000	176,287,000	352,574,000
			207-103	1층	1	1,474,047,490	282,862,510	1,756,910,000	351,382,000	175,691,000	175,691,000	175,691,000	175,691,000	175,691,000	175,691,000	351,382,000
			207-202	2층	1	1,504,662,600	288,737,400	1,793,400,000	358,680,000	179,340,000	179,340,000	179,340,000	179,340,000	179,340,000	179,340,000	358,680,000
			207-203	2층	1	1,492,169,890	286,340,110	1,778,510,000	355,702,000	177,851,000	177,851,000	177,851,000	177,851,000	177,851,000	177,851,000	355,702,000
			207-204	2층	1	1,498,420,440	287,539,560	1,785,960,000	357,192,000	178,596,000	178,596,000	178,596,000	178,596,000	178,596,000	178,596,000	357,192,000
			207-302	3층	1	1,517,163,700	291,136,300	1,808,300,000	361,660,000	180,830,000	180,830,000	180,830,000	180,830,000	180,830,000	180,830,000	361,660,000
			207-303	3층	1	1,510,913,150	289,936,850	1,800,850,000	360,170,000	180,085,000	180,085,000	180,085,000	180,085,000	180,085,000	180,085,000	360,170,000
			207-304	3층	1	1,511,542,400	290,057,600	1,801,600,000	360,320,000	180,160,000	180,160,000	180,160,000	180,160,000	180,160,000	180,160,000	360,320,000
			207-402	4층	1	1,527,164,580	293,055,420	1,820,220,000	364,044,000	182,022,000	182,022,000	182,022,000	182,022,000	182,022,000	182,022,000	364,044,000
			207-403	4층	1	1,520,914,030	291,855,970	1,812,770,000	362,554,000	181,277,000	181,277,000	181,277,000	181,277,000	181,277,000	181,277,000	362,554,000
			207-404	4층	1	1,521,534,890	291,975,110	1,813,510,000	362,702,000	181,351,000	181,351,000	181,351,000	181,351,000	181,351,000	181,351,000	362,702,000
			207-502	5층	1	1,535,906,960	294,733,040	1,830,640,000	366,128,000	183,064,000	183,064,000	183,064,000	183,064,000	183,064,000	183,064,000	366,128,000
			207-503	5층	1	1,529,664,800	293,535,200	1,823,200,000	364,640,000	182,320,000	182,320,000	182,320,000	182,320,000	182,320,000	182,320,000	364,640,000
			207-504	5층	1	1,530,914,910	293,775,090	1,824,690,000	364,938,000	182,469,000	182,469,000	182,469,000	182,469,000	182,469,000	182,469,000	364,938,000
			207-602	6층	1	1,544,657,730	296,412,270	1,841,070,000	368,214,000	184,107,000	184,107,000	184,107,000	184,107,000	184,107,000	184,107,000	368,214,000
			207-603	6층	1	1,538,407,180	295,212,820	1,833,620,000	366,724,000	183,362,000	183,362,000	183,362,000	183,362,000	183,362,000	183,362,000	366,724,000
			207-604	6층	1	1,538,407,180	295,212,820	1,833,620,000	366,724,000	183,362,000	183,362,000	183,362,000	183,362,000	183,362,000	183,362,000	366,724,000
			207-702	7층	1	1,552,158,390	297,851,610	1,850,010,000	370,002,000	185,001,000	185,001,000	185,001,000	185,001,000	185,001,000	185,001,000	370,002,000
			207-703	7층	1	1,545,907,840	296,652,160	1,842,560,000	368,512,000	184,256,000	184,256,000	184,256,000	184,256,000	184,256,000	184,256,000	368,512,000
			207-704	7층	1	1,546,528,700	296,771,300	1,843,300,000	368,660,000	184,330,000	184,330,000	184,330,000	184,330,000	184,330,000	184,330,000	368,660,000
059.2100C	59C	7	105-101	1층	1	1,470,926,410	282,263,590	1,753,190,000	350,638,000	175,319,000	175,319,000	175,319,000	175,319,000	175,319,000	175,319,000	350,638,000
			105-201	2층	1	1,495,920,220	287,059,780	1,782,980,000	356,596,000	178,298,000	178,298,000	178,298,000	178,298,000	178,298,000	178,298,000	356,596,000
			106-101	1층	1	1,466,546,830	281,423,170	1,747,970,000	349,594,000	174,797,000	174,797,000	174,797,000	174,797,000	174,797,000	174,797,000	349,594,000
			106-201	2층	1	1,492,169,890	286,340,110	1,778,510,000	355,702,000	177,851,000	177,851,000	177,851,000	177,851,000	177,851,000	177,851,000	355,702,000
			106-301	3층	1	1,504,662,600	288,737,400	1,793,400,000	358,680,000	179,340,000	179,340,000	179,340,000	179,340,000	179,340,000	179,340,000	358,680,000
			107-101	1층	1	1,466,546,830	281,423,170	1,747,970,000	349,594,000	174,797,000	174,797,000	174,797,000	174,797,000	174,797,000	174,797,000	349,594,000
			107-201	2층	1	1,492,169,890	286,340,110	1,778,510,000	355,702,000	177,851,000	177,851,000	177,851,000	177,851,000	177,851,000	177,851,000	355,702,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이버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입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며,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조망권별 등의 다양한 조건을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인지세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대별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공급금액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이에 대해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유상 옵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중도금 및 잔금) 납부 시 은행 전산망 장애 등으로 오류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산정될 수 있으므로 납부일 은행 업무 시간 내 납부를 권장합니다.
-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고,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6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기준 공정 시점 이후 중도금 납입일자는 예정 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중 일부는 사업주체가 대출기관을 알선한 경우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 취급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 가능시 총 분양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용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동별 사용검사 또는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아 입주하는 경우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15일 이후에는 미납한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소유권보존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 부적격 사유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 부과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 건설 사업 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산 검색 결과 당첨 사실, 이중 당첨 및 주택 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 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 지역은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주민등록표 등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으로 합니다.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 및 계약체결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재건축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동일 주택형에 아파트라도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에 대해 조합원 무상제공 품목 및 마감재 등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별 라인별 최고층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동·호수 배치도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 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관 색채, 부대시설, 문주, 조경시설물 등의 계획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p>'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p> <p>→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li> <li>-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li> <li>-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li> </ul> </div> <p>→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p>	<p>-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p> <p>-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p> <p><b>-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b></p> <p>-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p>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 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인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p>				
무주택 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p>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5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li> </ul>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부 서울남부지방보훈청 복지과</li> <li>■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li> <li>■ 장애인 :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li> <li>■ 중소기업 근로자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ul>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5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함</li> </ul> </li> <li>■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li> </ul> </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li> <li>■ ①지역 : 해당시·도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 50%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50%</li> <li>※ 단, 해당 시·도에서 경쟁 발생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우선공급 낙첨자가 기타지역 거주자와 재경쟁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은 적용하지 않음</li> </ul>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li> <li>■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li> <li>■ ①소득구분</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e1f2;"> <th style="width: 15%;">단계</th> <th style="width: 25%;">소득구분</th> <th style="width: 60%;">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생아 우선공급 (2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생아 일반공급 (10%)</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우선공급 (2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공급 (10%)</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추첨공급</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p>※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p> <p>※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②순위</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e1f2;"> <th style="width: 15%;">순위</th> <th style="width: 85%;">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순위</td> <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순위</td> <td>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li> </ul>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3.20.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533,764원~ 10,547,268원	8,802,203원~ 12,323,083원	9,326,986원~ 13,057,779원	9,906,264원~ 13,868,768원	10,485,542원~ 14,679,757원	11,064,820원~ 15,490,74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9,040,517원~ 12,054,021원	10,562,643원~ 14,083,523원	11,192,383원~ 14,923,176원	11,887,517원~ 15,850,021원	12,582,650원~ 16,776,866원	13,277,784원~ 17,703,710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비고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또는 소득금액 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 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li>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li> </ul> </li> <li>■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li> </ul> </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li>-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li> <li>- 세대주일 것</li> </ul> </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li> <li>■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li> <li>■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li> </ul> </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가점항목</th> <th style="text-align: center;">가점상한</th> <th style="text-align: center;">가점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점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가점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9" style="text-align: center;">①무주택기간</td> <td rowspan="9" style="text-align: center;">32</td> <td style="text-align: center;">만30세 미만 미혼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8년 이상 ~ 9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8</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년 이상 ~ 2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년 이상 ~ 3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4</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년 이상 ~ 4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6</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년 이상 ~ 5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8</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년 이상 ~ 6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d style="text-align: center;">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년 이상 ~ 7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4</td> <td style="text-align: center;">15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3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년 이상 ~ 8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6</td> <td></td> <td></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②부양가족수</td>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35</td> <td style="text-align: center;">0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4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2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5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d style="text-align: center;">6명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3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td> <td></td> </tr> <tr> <td rowspan="9" style="text-align: center;">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 <td rowspan="9" style="text-align: center;">17</td> <td style="text-align: center;">6개월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8년 이상 ~ 9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개월 이상 ~ 1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년 이상 ~ 2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년 이상 ~ 3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3</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년 이상 ~ 4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4</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년 이상 ~ 5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년 이상 ~ 6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 style="text-align: center;">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6</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년 이상 ~ 7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15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7</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년 이상 ~ 8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9</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px;">※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p> <p>※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p>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li> <li>*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li> </ul> </li> </ul>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li> </ul> </li> <li>■ 배우자 분리세대의 세대원을 직계존속으로 부양가족수에 포함할 경우, 배우자는 해당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 함</li> <li>■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li> </ul>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5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내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li> <li>■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li> <li>※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li> </ul> </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li>-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li> <li>- 세대주일 것</li> </ul> </li> <li>■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li> <li>-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li> <li>*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li> <li>*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li> </ul> </li> </ul> </li> <li>■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li> <li>**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li> </ul> </li> </ul>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3.20.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비고**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신생아 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9,793,893원~	11,442,864원~	12,125,082원~	12,878,143원~	13,631,204원~	14,384,266원~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1인 가구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또는 소득금액 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li> <li>*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li>-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li> <li>■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1순위 신청 가능</li> <li>- 세대주일 것(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규제지역 1순위 청약 불가)</li> <li>-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li> <li>-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li> </ul> </li> <li>■ 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2순위로 청약신청 가능하며,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추첨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li> </ul>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ul> </li> <li>-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p> <table border="1" data-bbox="288 831 2141 99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구분</th> <th style="width: 25%;">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 style="width: 25%;">그 밖의 광역시</th> <th style="width: 25%;">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li> </ul>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li> <li>-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li> <li>-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li> </ul> </li> <li>■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li> <li>■ ②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li> </ul> </li> </ul> <table border="1" data-bbox="288 1358 2141 1493"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구분</th> <th style="width: 25%;">가점제</th> <th style="width: 25%;">추첨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60㎡ 이하</td> <td>40%</td> <td>60%</td> </tr> <tr> <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 <td>70%</td> <td>30%</td> </tr> <tr> <td>전용면적 85㎡ 초과</td> <td>80%</td> <td>20%</td> </tr> </tbody> </table>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70%	30%	전용면적 85㎡ 초과	80%	20%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70%	30%																			
전용면적 85㎡ 초과	80%	2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분	내용
<b>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b>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b>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b>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 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li> <li>-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li> </ul>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ul> <p>5) 확인방법 :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li> <li>-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li> </ul>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p>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p> <p>*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p>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세대원을 직계존속으로 부양가족수에 포함할 경우, 배우자는 해당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 함

### ■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당첨자발표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6.03.31.(화) (청약Home 인터넷 : 09:00 ~ 17:30) (주택전시관 : 10:00 ~ 14:0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li>아크로 드 서초 주택전시관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1)</li> </ul>	2026.04.09.(목)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6.04.01.(수) 09:00 ~ 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li>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li> </ul>
		기타지역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2026.04.02.(목) 09:00 ~ 17:30			
	2순위		2026.04.03.(금) 09:00 ~ 17:30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정보취약계층)에 한해 당일 10:00~14:00 주택전시관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를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여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li> <li>-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li> </ul>	
공고단지 청약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li> <li>-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li> <li>-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li> </ul>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li> <li>- 조회기간 : 2026.04.09.(목) ~ 2026.04.18.(토) (10일간)</li> <li>-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li> <li>-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li> </ul>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일시 : 2026.04.09.(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li> <li>-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li> <li>*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일정 및 장소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장소
정당 당첨자 서류 제출 (특별공급 / 일반공급)	2026.04.10.(금) ~ 2026.04.12.(일) (10:00 ~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크로 드 서초 주택전시관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1)</li> </ul>
예비 입주자 서류 제출 (특별공급 / 일반공급)	추후 별도 안내	

### ■ 유의사항

-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자격확인서류 제출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 청약신청자에 한하여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
-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기간 내에는 당첨자의 서류 접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계약포기 의사로 간주합니다.
-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제증명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표기하여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2조 및 제54조에 의거 사업주체가 서류접수일로부터 5년동안 보관하고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함합니다
-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 예비입주자 사전 자격확인서류 제출 일정은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 하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인터넷 청약(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특별공급신청서는 생략</li> <li>※ 일반공급 당첨자 제외</li> </ul>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li> <li>•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li> </ul>
	○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모바일 신분증 제외)</li> <li>※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li> <li>※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li> </ul>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급기준 : 본인 발급용 / 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용</li> <li>※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li> <li>※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제출처 : DL이앤씨(주))</li> </ul>
	○		인감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li> </ul>
	○		서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무주택서약서, 기존주택처분 관련 서약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등))</li> </ul>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li> </ul>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li> <li>※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li> <li>※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비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li> <li>※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배우자와의 혼인사항 및 상세 내용)</li> <li>※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li> </ul>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 초과한 기간 또는 연간 183일 초과한 해외체류 여부 확인</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li> <li>※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li> </ul>
		○	복무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군복무기간 10년 이상 명시)</li> </ul>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li> <li>※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li> </ul>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 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li> <li>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재직증명서</li> <li>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li> <li>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li> <li>※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목적 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li> <li>※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li> <li>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li> <li>※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li> </ul>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대원 및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li> <li>※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li> </ul>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li> </ul>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포함'으로 발급)</li> <li>※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li> <li>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li> <li>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li> <li>※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li>※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li> </ul>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li> </ul>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출산한 경우 출생증명서))</li> <li>※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li> <li>※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li> </ul>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li> </ul>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li> <li>※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li> </ul>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1년 이상 등재되어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직계비속	• 신생아(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을 포함) 자녀로 신청한 경우 또는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태아인 경우 임신진단서로 대체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출산한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기록대조일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서류 제출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비사업자 확인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사실증명서(신고사실없음)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시 "신고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부동산 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확인서(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 제출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혼인 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1년 이상 등재되어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직계비속	• 신생아(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을 포함) 자녀로 신청한 경우 또는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태아인 경우 임신진단서로 대체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출산한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소득세입증서류 (납부내역증명서 등)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인증서류 참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기록대조일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서류 제출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비사업자 확인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사실증명서(신고사실없음)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시 "신고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부동산소유현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확인서(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 제출서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24.06.19. 이후 출생 예정인 태아가 있어, 출산특례로 청약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출산한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24.06.19. 이후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어, 출산특례로 청약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 기입 필수)
		○		피부양 직계비속	• 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 기입 필수)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일반공급 당첨자 (가점제)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청약통장 가입은행) 청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 기입 필수)
		○		피부양 직계비속	• 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 기입 필수)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제3자 대리인 신청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발급기준 : 본인 발급용 / 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제출처 : DL이앤씨(주))
○		대리인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본인 및 세대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등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임이 명시된 공적 서류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소명서류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주택전시관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변동이력" 포함을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표1]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 자료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 불가)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재직증명서상 육아휴직이 명시되어야 함)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및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 불가) ②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②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 불가)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①,② 해당 직장
	직장 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 불가) ② 소득금액증명원 ③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②,③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신규사업자 등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원본) ②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 산정)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법인대표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원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소득금액증명원 ③ 전년도 재무제표(직인날인) ④ 재직증명서	① 등기소 ② 세무서 ③,④ 해당 직장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③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및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② 세무서 ③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①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① 해당 직장 ② 세무서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주택전시관에 비치) 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주택전시관 비치 ② 세무서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소득세 납부 인증서류

구분	확인자격	증빙제출서류	발급처
자격인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세납부 인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근로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② 일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③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④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학원강사, 보험모집인, 프리랜서 등)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0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음을 확인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해당직장 / 세무서 ③ 세무서 ④ 해당직장

■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구분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구,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③ 행정복지센터
	추가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 표준액 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④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 외 위택스(www.wetax.go.kr) ④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단위로 재산세 내역 발급) ※ 부동산 소유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을 증빙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 위택스(www.wetax.go.kr)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유의사항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상기 소득 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객관적인 소득산정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면 적격심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적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청약신청자는 소득관련 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자료제출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해당 대상입니다.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 체결 기간	계약 장소	비고
당첨자 계약 체결	2026.04.20.(월) ~ 2026.04.23.(목) (10:00 ~ 16:00)	아크로 드 서초 주택전시관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1)	특별공급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 시 제출서류는 아래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개별안내 예정입니다.

### ■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604-794363	디엘이앤씨(주), 서초신동아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예금주는 공동명의로 “디엘이앤씨(주)”로 표기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상기 계좌 및 공급계약 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무통장 입금 시에는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예시 : 103동 1501호 홍길동 → 01031501홍길동)
- ※ 계약금 납부 후 입금증을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택전시관 수납 불가)
- ※ 중도금 및 잔금은 공급계약 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 ※ 계약금 납부 가상계좌 및 공급계약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모계좌(우리은행 1005-604-794363, 예금주: 디엘이앤씨(주), 서초신동아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로 관리됩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현장 수납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모바일 신분증 제외) ※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기한 내 제출 시 제외)		• 발급기준 : 본인 발급용 / 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제출처 : DL이앤씨(주))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용)		•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 확장 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함 (공급계약 : 사업주체와 계약자간 1/2씩 인지세부담 / 발코니 확장 : 시공자와 계약자간 각각 인지세 부담)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구매 방법 및 금액 - 구매방법 : 우체국, 은행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a href="https://www.e-revenuestamp.or.kr">https://www.e-revenuestamp.or.kr</a> )에 접속, 구매 및 출력 - 구매금액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 입주계획서(증빙자료 제출)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발급기준 : 본인 발급용 / 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제출처 : DL이앤씨(주))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모바일 신분증 제외) ※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2020.10.27.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로 계약체결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인지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세액(균등납부)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각각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세액(각각 납부)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 부동산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 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1577-55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여야 합니다.

##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에 관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와 금융기관 간의 중도금 대출을 알선 할 예정입니다.
- 아래 사항들은 중도금 대출의 알선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안내사항이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 대출금액·대출조건 및 대출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보장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 주택전시관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 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어떠한 보장 또는 보증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대출 여부는 계약자의 대출 적격사유 등을 고려하여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자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등의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알선이 제공되지 않거나, 알선이 제공될 경우라도 계약자의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부적격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경우는 본 아파트 공급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 가능시 총 분양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용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기간 내 실입주일 또는 입주기간의 만료일 중 빠른 날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 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적격 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이 실행 된 이후 발생하는 **대출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 조건이 아님)**
- 본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투기과열지구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하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개인의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시 중도금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미납부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주택전시관은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사업주체에서는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 그 결과를 당첨자에게 즉시 통보하며, 당첨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 중복 당첨시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처리 됩니다.

####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①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②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제53조 참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제외)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④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 에 따라 사업주체에 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약 부활요청서'(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함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 (「주택법」 제57조2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본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은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 80%이상 100%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주택법」 제5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2년이 적용됩니다.**
- 「주택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b>검색대상</b>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b>주택의 범위</b>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b>주택처분 기준일</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li> <li>2.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처리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li> <li>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li> <li>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li> </ol> </li> </ol> </li> <li>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li> </ol> <p>*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b>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li> <li>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li> <li>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li> <li>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li> </ol> </li> </ol>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 및 제3조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확한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9년 02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함)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앞으로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지정 기간은 500세대 이상 단지는 최소 60일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일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의 변경, 조기준공,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굴, 정부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의 사유에 따라 앞당겨지거나 지연되는 등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분양계약서 등에 따라 입주예정일이 통보된 경우 입주예정일의 변경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으며,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어 입주예정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사업주체가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세대관리비 (전기/가스/수도/난방 등 포함) 및 제세공과금(재산세 등) 등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에는 실입주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며, **입주전 인테리어 공사는 잔금 완납 후 가능하며 이 경우 인테리어 공사일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고, 인테리어 공사 시 발생하는 쓰레기, 폐기물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분양대금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비용 (계약금, 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계약금, 중도금 대출에서 담보대출로 전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 계약금,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된 관리주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만 등으로 인한 문제 (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 등) 는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부대시설** : 스카이라운지, 피트니스, 필라테스룸, 스크린골프라운지, 스크린골프룸, 사우나, 1단지 그랜드라이브러리(작은도서관), 2단지 실내수영장, 에듀라운지, 어린이집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 2층 주차장	3.0m	3.0m
지하 3~4층 주차장	2.3m	2.3m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구분	내진능력(MMI 등급)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2017)	VII 등급(7등급)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가산비 공시**

- 「주택법」 제57조제7항에 따라 공사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분양가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 금액으로 상한금액 이하로 확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원)

항목	1. 택지비	2. 직접공사비	3. 간접공사비	4. 설계비	5. 감리비	6. 부대비	7. 그 밖의 비용	합계
금액	85,164,409,000	10,583,965,000	1,204,985,000	236,875,000	285,340,000	798,344,000	3,183,823,000	101,457,741,000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가산비 산정

(단위 : 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택지가산비	합계	11,445,105,290	-
	지반공사(암석지반공사, 흙막이 및 차수벽공사)	961,407,42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도로 및 도시공원 설치비용	8,932,020,188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지장물 철거비용	578,513,69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감정평가 수수료 및 검토 수수료	34,134,21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정비사업 필수경비(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및 운영비)	882,645,781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택지와 관련된 필요적 경비	56,384,00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건축가산비	합계	3,183,823,674	-
	구조형식	179,298,348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공동주택 성능등급	96,212,029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사업승인 조건	30,736,702	-
	법정초과 복리시설	510,634,986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인텔리전트설비	1,460,031,264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분양 보증수수료	322,224,928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39,481,044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지하층충고 상향 공사비용	32,670,61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법령, 조례 등의 재정 또는 개정 등	512,533,763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해당 감정평가기관(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5항)

(단위 : 원)

구분	감정기관	감정금액	평균
감정평가 금액	(주)감정평가법인 국토	2,265,829,692,000	2,265,829,692,000
	(주)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2,265,829,692,000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 / 토목 / 기계	소방 / 정보통신	전기
회사명	(주)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주)에다종합설계감리사무소	(주)토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금액	6,131,626,000	1,119,400,000	885,428,000

■ **시행자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및 시행자	시공회사
상호명	서초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110, 2층 201호(서초동, 수복빌딩)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65, 에이동(마곡동, 원그로브)
법인등록번호	110171-0081626	110111-7736808

■ **보증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12026-101-000100호	81,166,184,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아파트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p>【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p> <p>【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p>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p>【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p> <p>【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p>
--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p>【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p>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2020.10.27. 개정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특별시 서초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주택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 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번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제3호)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 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를 설치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 품목)

-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적용 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바닥재	강마루, 현관/발코니/다용도실 바닥타일(시멘트몰탈 포함), 걸레받이, 현관디딤판, 현관마루귀틀, 발코니/다용도실 재료분리대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벽,천장재	벽지(초배 포함), 벽체 마감(타일), 발코니 수전, 신발장, 거실 아트월, 등박스, 반자동림(몰딩포함), 천장인테리어 마감재	석고보드, 단열재, 석고보드마감, 발코니벽체 석고보드, GAS배관, 천정틀 및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 천장 도장, 소방관련시설(감지기), 설비배관
조명기구	천장 및 벽체 조명기구 일체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설치 가능한 벽체에 해당)
욕실	천장재(천정틀 포함), 욕실 패널형 마감재, 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샤워부스, 욕실장, 위생기구류(양변기, 세면기, 욕조, 기타 악세서리 류 등), 수전류, 욕실환기팬, 젠다이 상부 석재	벽체 및 바닥방수,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주방가구 및 기타사향	주방가구(주방상판, 냉장고장 등, 싱크볼 및 악세서리 포함), 주방기구류(가스쿡탑, 레인지후드 등), 수전류, 주방벽 건식 패널형 마감재	소방관련시설,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일반가구, 시스템가구	신발장, 침실1 화장대(59C 해당)	-
도어	목재-플라스틱문틀(문짝, 문틀, 상부덧판, 문선 등 포함), 창호철물 일체(도어록, 도어레버), 현관 디지털도어록	세대 현관방화문(문짝 포함), 실외기실 출입문(문짝 포함), PL창호(유리 포함), 실외기실 루버
창호 및 기타사향	발코니 수전류, 음성인식 시스템 및 관련 기기류	설비배관, 거실월패드, 외부 발코니난간대, 하향식피난구, 에어컨 냉매배관(해당실), 전열교환기 및 환기덕트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59	59A	59C
마이너스옵션 금액	25,704,000	25,779,000	25,732,000

## ■ 마이너스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시 선택가능하며,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마이너스옵션 선택의 해당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 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과 추가선택품목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추가 선택품목 옵션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따른 최초 입주가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최초 입주가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시공, 설치관련 약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용은 일반분양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반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발코니 중 세탁공간 및 실외기실(하향식피난구)를 제외한 모든 발코니는 드레인이 없습니다.**
- 경량벽체 제거(변경)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견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 시 세대 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I) 발코니확장 공사비

※ 추가선택품목(I)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2026.04.20.(월)~2026.04.23.(목))과 동시에 계약 진행해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30%)	잔금(60%)	비고
		계약시	2026.08.25.	입주지정일	
59	12,044,000	1,204,400	3,613,200	7,226,400	-
59A	12,044,000	1,204,400	3,613,200	7,226,400	-
59C	12,375,000	1,237,500	3,712,500	7,425,000	-

### ■ 추가선택품목(I)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104-840303	디엘이앤씨(주)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계약체결 일정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 ■ 추가선택품목(I) 발코니확장 계약 유의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을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은 공동주택 분양 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은 발코니(보조주방)와 실외기실을 제외한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시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자재조달 및 세대공사 등 공사여건 상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자재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사이버 주택전 시관 등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 확장 미선택시 각 실과 발코니가 만나는 면에 창호가 설치되며 발코니 외부 쪽으로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로 인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높이가 축소 시공되며 발코니의 바닥레벨이 거실 및 침실보다 높게 시공되어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수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발코니 확장 세대는 미확장 발코니(다용도실)에 선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해당구간 천정면 단열재 설치로 커튼박스 높이가 낮게 설치 되거나, 설치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로 시공한 입주자는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결로 등으로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책임은 해당 입주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 책임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입주 후 발코니 확장을 개별로 시공한 입주자는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등기구 및 배선기구의 사양은 확장형에 비해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탁기 설치 공간 및 수전 등이 설치되는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추가선택품목 선택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각 주택형별·타입별 발코니 면적 및 창호 규격이 상이하여 확장금액이 다르게 산정되었으니, 사이버 주택전시관 등에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현저히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재 및 가구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옆 세대가 확장세대일 경우 벽체 단열조치는 비확장 선택 세대에 설치되어, 서비스 면적이 일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실 등은 제외)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인접 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실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비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일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구(일반, 주방) 배면에는 시공 선후 관계상 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목창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제조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사이버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 외부 파손 및 훼손 사항은 시공자에게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골조와 이질 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 부분의 디테일이 시공상의 이유로 사이버 주택전시관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형(기본형) 단위세대는 발코니 사시 대신 분합문이 설치되고, 발코니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어, 외부입면이 확장형 단위세대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은 현재 LX하우시스 창호로 구현되었으나, 외부창호 제조사 선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제조사에 따라 열관류율 및 TDR값은 법규를 만족하는 범위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II)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 추가선택품목(II)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2026.04.20.(월)~2026.04.23.(목))과 동시에 계약 진행해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구성	판매가격		비고
			59, 59A	59C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택1, 구성 택1)	LG/삼성	일반형 : 거실+침실1/실내기2대	3,570,000		※ 홈네트워크 연결기능 함 와이파이 기능 장착 ※ 제품모델은 실별로 상이하고 표기량이 많아 판매 시 별도 안내
	LG/삼성	일반형 : 거실+침실1+침실2+침실3/실내기 4대	6,510,000		
	LG	프리미엄형 : 거실+침실1/실내기2대	3,970,000		
	LG	프리미엄형 : 거실+침실1+침실2+침실3/실내기 4대	7,310,000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모델번호는 실별로 상이하고 표기량이 많아 추가선택품목 판매 시 안내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공사비 산정 시, 실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공정상의 사유로 중도금 납부 이후 추가, 변경, 해지가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저 위치, 욕실 배기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고 등기구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실내기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미선택시 거실 및 침실 1에는 천장형 냉매배관만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어, 스탠드형이나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가 불가합니다. 입주 후 스탠드형이나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를 원하는 경우 별도의 공사가 필요함을 충분히 확인한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용량에 맞는 제품으로 실외기 공간에 설치되며, 운전소음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시운전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되게 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에 설치되는 실외기실 쪽의 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관이 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일반형과 프리미엄형은 세대 내 혼용 선택 불가합니다. (LG 제조사 기술적 호환 불가)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운전 시 반드시 실외기실 그릴을 개방해야 하며, 그릴을 닫고 운전할 경우 성능 및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실내기 수량에 따라 실외기 용량 및 개수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 후 개별적으로 에어컨 설치시 에어컨 실외기는 하향식 피난사다리 및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미선택 시 추후 입주자 별도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 홈네트워크 시스템 및 월패드 시스템 연동이 불가합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에 구현된 천장형 냉난방기는 사이버 주택전시관용 전시용품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는 장비 사양 및 위치와는 무관하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바람 토출구에 이슬이 맺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부 온도 대비 5°C 이내로 설정하며 바람세기를 강풍으로 바람날개 방향을 좌우, 상하 반복하여 움직여서 가동하시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II) 납부일정

계약금(10%)	중도금(30%)	잔금(60%)
계약 시	2026.08.25.	입주 시(입주지정기간 내)

■ 추가선택품목(II)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비용(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1005-304-820129	디엘이앤씨(주)

- ※ 상기 계좌와 아파트 공급대금 및 추가선택품목(I)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입금 시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비용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각 회차별 납부 및 납부금액에 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II) 비용은 상기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주택전시관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결제 불가)
- ※ 지정된 납부일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3자리), 호수(4자리)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101호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하여야 함)
- ※ 추가선택품목(II) 비용은 추가선택품목(II) 계약체결 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은 지정일에 납부하며, 입주 시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계약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III)

※ 추가선택품목(III)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2026.04.20.(월)~2026.04.23.(목))과 동시에 계약 진행해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인테리어 스타일 STYLE 선택

※ STYLE 선택시 STYLE별로 구성된 내용은 변경이 불가하고 각 스타일간 개별품목의 교차 선택은 불가합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품목		구성	판매가격	비고
59, 59A	내추럴 모던	프리미엄 신발장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 +에어브러시 +신발살균기	11,220,000	※ 스타일 선택 시, 해당 스타일의 구성은 변경할 수 없으며, 스타일간 개별 품목의 교차선택은 불가함
		주방 상하부장 +아일랜드장(ㄷ자형 주방) +상판/벽 +냉장고장	상하부장(수입 푸트라 PET) +아일랜드장(ㄷ자형 주방/수입 푸트라 PET) +상판/벽(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 +가구 조명 +인출식 수납형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 +무선충전 상판 콘센트		
	소프트 클래식	프리미엄 신발장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 +에어브러시 +신발살균기	11,730,000	
		주방 상하부장 +아일랜드장(ㄷ자형 주방) +상판/벽 +냉장고장	상하부장(수입 푸트라 PET) +아일랜드장(ㄷ자형 주방/수입 푸트라 PET) +상판/벽(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몬테비소) +가구 조명 +인출식 수납형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 +무선충전 상판 콘센트		
59C	내추럴 모던	프리미엄 신발장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 +에어브러시 +신발살균기	9,700,000	
		주방 상하부장 +상판/벽 +냉장고장	상하부장(수입 푸트라 PET) +상판/벽(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 +가구 조명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		
		침실1 고급형 화장대	화장대(수입 푸트라 PET) +상판(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 +벽부형 조명		
	소프트 클래식	프리미엄 신발장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 +에어브러시 +신발살균기	10,320,000	
		주방 상하부장 +상판/벽 +냉장고장	상하부장(수입 푸트라 PET) +상판/벽(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몬테비소) +가구 조명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		
		침실1 고급형 화장대	화장대(수입 푸트라 PET) +상판(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몬테비소) +벽부형 조명		

■ 현관 / 중문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구성	판매가격		비고
			59, 59A	59C	
공통	현관 중문	슬라이딩 도어	1,500,000	-	-
		스윙 도어	-	1,900,000	-
미니멀	프리미엄 신발장	신발장(PET)+에어브러시+신발살균기	1,050,000	1,130,000	-

■ 거실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구성	판매가격		비고
			59, 59A	59C	
미니멀	원목마루	딤 그레이(색상)	6,170,000	6,400,000	-
내추럴 모던	원목마루	캠리 아이보리(색상)	6,170,000	6,400,000	※ 스타일 선택 시 구매 가능
소프트 클래식	원목마루	딤 그레이(색상)	6,170,000	6,400,000	
공통	디자인 월 (택1)	현관 벽면+복도 벽면+주방 벽면 일부+거실 후면+거실 창호 주변 적용 ※ 59, 59A 냉장고장+아일랜드장 선택 시 구매가능 ※ 59C 냉장고장+아일랜드장 또는 베네타쿠치네 주방 선택 시 구매 가능	2,200,000	2,700,000	-
		현관 벽면+복도 벽면+주방 벽면 일부+거실 후면+거실 창호 주변 적용 ※ 스타일 선택 시 구매가능	-	2,600,000	
		현관 벽면+복도 벽면+주방 벽면+거실 후면+거실 창호 주변 적용	2,700,000	2,870,000	
	인피니티 도어	디자인 월 인피니티 도어(침실1,2,3,욕실2)	5,400,000	-	※ 디자인 월 선택 시 구매 가능
	인피니티 도어 (택1)	침실1 디자인 월 인피니티 도어	-	1,350,000	
		디자인 월 인피니티 도어(침실1,2,3,욕실2)	-	5,400,000	

■ 주방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구성	판매가격		비고
			59, 59A	59C	
미니멀	주방 상판/벽 마감재 업그레이드 +가구 조명	엔지니어드 스톤-라디언스/골든쇼어 +가구 조명	2,960,000	3,100,000	-
	선반 수납형 냉장고장 +아일랜드장(ㄷ자형 주방)	냉장고장(PET) +선반 수납형 키큰장(PET) +아일랜드장(ㄷ자형 주방,PET) +아일랜드장 상판(엔지니어드 스톤-라디언스/골든쇼어) +무선충전 상판 콘센트 ※ 주방 상판/벽 마감재 업그레이드+가구 조명 선택 시 구매가능	4,710,000	-	
	베네타쿠치네(Grigio Corda) 수입주방가구 +수입주방가구 일체 +주방상판/벽 마감재	외산주방 상/하부장(베네타쿠치네) +아일랜드장(ㄷ자형 주방,베네타쿠치네) +냉장고장(베네타쿠치네) +인출 수납형 키큰장(베네타쿠치네) +상판 콘센트 +주방상판/벽(엔지니어드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텔라카토)	26,970,000	-	※ 미선택 시 빌트인 냉장고 품목 선택 불가  ※ 주방 상판/벽 마감재 업그레이드 +가구조명과 냉장고장 +아일랜드장은 베네타쿠치네 수입주방가구 선택 시 선택 불가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냉장고장(PET) +아일랜드장(PET) +아일랜드장 상판(엔지니어드 스톤-라디언스/골든쇼어) +무선충전 상판 콘센트 ※ 주방 상판/벽 마감재 업그레이드+가구 조명 선택 시 구매가능	-	2,830,000	
	베네타쿠치네(Grigio Corda) 수입주방가구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주방상판/벽 마감재	외산주방 상/하부장(베네타쿠치네) +아일랜드장(베네타쿠치네) +냉장고장(베네타쿠치네) +상판 콘센트 +주방상판/벽(엔지니어드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텔라카토)	-	23,540,000	
내추럴 모던	아일랜드장	아일랜드장(수입 푸트라 PET) +상판(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 +무선충전 상판 콘센트	-	2,250,000	※ 스타일 선택 시 구매 가능
소프트 클래식	아일랜드장	아일랜드장(수입 푸트라 PET) +상판(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몬테비소) +무선충전 상판 콘센트	-	2,450,000	
공통	주방 수전	외산(한스그로헤)	650,000		-

■ 침실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구성	판매가격		비고
			59, 59A	59C	
미니멀	침실 1 불박이장 (59, 59A 택1)	와이드형 불박이장(PET)	2,310,000	2,330,000	-
		파우더 결합형 와이드 불박이장 : 불박이장(PET) +화장대(거울) +상판(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실버쉐이드) +콘센트 +다운라이트	2,930,000	-	-
내추럴 모던	침실 1 불박이장 (59, 59A 택1)	와이드형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	3,500,000	3,540,000	※ 스타일 선택 시 구매 가능
		파우더 결합형 와이드 불박이장 :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 +화장대(거울+벽부형 조명) +상판(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 +콘센트 +다운라이트	4,530,000	-	
소프트 클래식	침실 1 불박이장 (59, 59A 택1)	와이드형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	3,620,000	3,650,000	
		파우더 결합형 와이드 불박이장 :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 +화장대(거울+벽부형 조명) +상판(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몬테비소) +콘센트 +다운라이트	4,860,000	-	
공통	침실1 스마트 스위트룸 (택1)	내추럴 : 침대(내추럴 헤드보드+사이드 테이블 1개+독서등) +다운라이트 특화(확산형) +통합컨트롤 조명제어시스템 +스마트 전동커튼레일 2열 ※ 매트리스 제외 / 스마트홈 연계 조명시스템 선택 시에만 구매 가능	4,700,000		※ 매트리스 제외 / 스마트홈 연계 조명시스템 선택 시에만 구매 가능
		브라운 : 침대(브라운 헤드보드+사이드 테이블 1개+독서등) +다운라이트 특화(확산형) +통합컨트롤 조명제어시스템 +스마트 전동커튼레일 2열 ※ 매트리스 제외 / 스마트홈 연계 조명시스템 선택 시에만 구매 가능	4,750,000		
	매트리스	ACE SUITE GRAND(킹 사이즈, 가로 1600mm,세로 2000mm,높이 320mm) ※ 침실1 스마트 스위트룸 선택 시에만 구매 가능	1,930,000		※ 침실1 스마트 스위트룸 선택 시에만 구매 가능
미니멀	침실2 불박이장	일반형 : 불박이장(PET)	1,460,000	-	-
	침실2 불박이장 (59C 택1)	와이드형 : 불박이장(PET)	-	2,100,000	-
		데스크형 : 불박이장(PET)+데스크+가구 조명+상판 콘센트	-	3,720,000	-
	침실3 불박이장 (59, 59A 택1)	일반형 : 불박이장(PET)	2,020,000	1,460,000	-
데스크형 : 불박이장(PET)+데스크+가구 조명+상판 콘센트		3,600,000	-	-	
침실3 팬트리 포스트형 시스템 선반	드레스용 포스트형 시스템 선반+팬트리 도어(PET)	-	1,000,000	-	

■ 조명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구성	판매가격		비고
			59, 59A	59C	
공통	스마트홈 연계 조명 시스템 (택1)	확산형 : - 거실 다운라이트 디밍 제어시스템(12단계밝기조절) +거실 커튼박스 간접조명 +거실/주방/복도 조명 다운라이트 특화(확산형) +거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스마트홈 연동 - 침실 디밍 제어시스템(12단계색온도, 밝기조절) 직부등 +침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스마트홈연동 - 욕실 센서미등 겸용 다운라이트	4,260,000	4,190,000	-
		NGR형 : - 거실 다운라이트 디밍 제어시스템(12단계밝기조절) +거실 커튼 박스 간접조명 +현관/거실/주방/복도 조명 다운라이트 특화(NGR) +거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스마트홈 연동 - 침실 디밍 제어시스템(12단계색온도, 밝기조절) 직부등 +침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스마트홈 연동 - 욕실 센서미등 겸용 다운라이트	6,210,000	6,060,000	-

■ 욕실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구성	판매가격		비고
			59, 59A	59C	
공통	복합환풍기	전체 욕실 적용	1,300,000		-
	고급형 샤워부스	욕실1 적용	2,100,000		-
	욕실 고급형 패키지	외산, 전체 욕실 적용 - 외산 세면기+외산 세면기 수전 +외산 선반형 샤워수전 +외산 선반형 욕조수전 +외산 슬라이드바 +외산 안마샤워 헤드 +외산 비데일체형 양변기	6,900,000		-

■ 다용도실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구성	판매가격		비고
			59, 59A	59C	
공통	세라믹 탄성코트	발코니/다용도실(벽/천장), 실외기실(벽/천장)	780,000	720,000	-
	세탁기장+손빨래 하부장	세탁기장+손빨래 하부장(PET)+국산 수전+상판(MMA-샌디드구스)	1,550,000	1,930,000	-

■ 빌트인 가전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구성	판매가격		비고
			59, 59A	59C	
빌트인 전기오븐 (택1)	나비엔 매직	컨백션 스팀 오븐(EOB-5004)	650,000		※ 59, 59A 아일랜드장, 인테리어 스타일 또는 베네타쿠치네 수입주방가구 선택 시 구매 가능  ※ 59C 아일랜드장 또는 베네타쿠치네 수입주방가구 선택 시 구매 가능
	LG	DIOS 광파오븐(MZ385EBTA)	480,000		
	삼성	전기오븐(NQ50T8539BK)	900,000		
	나비엔 매직/베네타쿠치네	컨백션 스팀 오븐(EOB-5004)	750,000		
	LG/베네타쿠치네	DIOS 광파오븐(MZ385EBTA)	580,000		
	삼성/베네타쿠치네	전기오븐(NQ50T8539BK)	1,000,000		
빌트인 식기세척기 (택1)	LG	디오스 14인용(DUE5NSE)	1,650,000		-
	LG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14인용(DBS14)	3,000,000		
	LG/베네타쿠치네	디오스 14인용(DUE5NSE)	1,550,000		
	LG/베네타쿠치네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14인용(DBS14)	2,900,000		
빌트인 전기쿡탑 (하이브리드쿡탑/인덕션) (택1)	나비엔 매직	인덕션 2구 +가스 1구(ERG-5103)	850,000		※ 미선택 시 3구 가스쿡탑으로 설치
	나비엔 매직	보더리스 인덕션 4구(ERI-7704)	1,950,000		
	LG	인덕션 3구(BEI3GQBI)	1,100,000		
	삼성	인덕션 3구(NZ63B5056AK)	1,070,000		

빌트인 냉장고 (택1)	미니멀	LG	오브제컬렉션 컨버터블 패키지(오브제 1도어 냉장+1도어 냉동+1도어 김치냉장고) +가전 맞춤형 빌트인 냉장고장(PET)BC1L2AA(G) +BC1F2AA(G)+BC1K2AA(G)	6,600,000	4,590,000	※ 냉장고장 또는 베네타쿠치네 수입주방가구 선택 시 구매 가능  ※ 빌트인 냉장고 품목은 택1이며, 구성 및 디자인/위치/색상 변경 불가  ※ 빌트인 냉장고 가전 판매가격에는 가전 맞춤형 냉장고장 설치 시 증가 금액 포함  ※ 가전 맞춤형 냉장고장은 평형별, 가전별로 디자인 상세가 상이하여 판매 시 별도 안내
			오브제컬렉션 4도어냉장고 +3도어 김치냉장고 +가전 맞춤형 빌트인 냉장고장(PET)BC4S1AA1(G) +BC3K1AA1(G)	7,470,000	6,690,000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냉장고 +냉동고 +와인냉장고 +가전 맞춤형 빌트인 냉장고장(PET)CL24+CF24+CW24	46,050,000	44,030,000	
	미니멀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 +가전 맞춤형 빌트인 냉장고장(PET)RR40C7(9/8)95AP(Satin) +RZ34C7(9/8)65AP(Satin)+RQ34C7(9/8)45AP(Satin)	6,880,000	6,750,000	
			인피니트 1도어 냉장 +냉동 +와인셀러 +가전 맞춤형 빌트인 냉장고장(PET)RR40C9981APG(Timeless Metal) +RZ38C9891APG(Timeless Metal)+RW33C99B1TFG(Timeless Metal)	17,350,000	15,340,000	
			인피니트 1도어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 +가전 맞춤형 빌트인 냉장고장(PET)RR40C9981APG(Timeless Metal) +RZ38C9891APG(Timeless Metal)+RQ38C9991APG(Timeless Metal)	17,070,000	15,060,000	
	미니멀	LG/베네타쿠치네	오브제컬렉션 컨버터블 패키지(오브제 1도어 냉장+1도어 냉동+1도어 김치냉장고) +가전 맞춤형 빌트인 냉장고장(베네타쿠치네)BC1L2AA(G) +BC1F2AA(G)+BC1K2AA(G)	6,440,000	6,410,000	
			오브제컬렉션 4도어 냉장고 +3도어 김치냉장고 +가전 맞춤형 빌트인 냉장고장(베네타쿠치네)BC4S1AA1(G) +BC3K1AA1(G)	7,070,000	7,780,000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냉장고 +냉동고 +와인냉장고 +가전 맞춤형 빌트인 냉장고장(베네타쿠치네)CL24 +CF24+CW24	45,300,000	45,200,000	

미니멀	삼성/베네타쿠치네	비스포크 1도어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 +가전 맞춤형 빌트인 냉장고장(베네타쿠치네)RR40C7(9/8)95AP(Satin) +RZ34C7(9/8)65AP(Satin)+RQ34C7(9/8)45AP(Satin)	6,710,000	6,680,000	
		인피니트 1도어 냉장 +냉동 +와인셀러 +가전 맞춤형 빌트인 냉장고장(베네타쿠치네)RR40C9981APG(Timeless Metal) +RZ38C9891APG(Timeless Metal)+RW33C99B1TFG(Timeless Metal)	16,930,000	16,900,000	
		인피니트 1도어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 +가전 맞춤형 빌트인 냉장고장(베네타쿠치네)RR40C9981APG(Timeless Metal) +RZ38C9891APG(Timeless Metal)+RQ38C9991APG(Timeless Metal)	16,660,000	16,630,000	
내추럴 모던	LG	오브제컬렉션 컨버터블 패키지(오브제 1도어 냉장+1도어 냉동+1도어 김치냉장고) +가전 맞춤형 빌트인 냉장고장(수입푸트라PET)BC1L2AA(G) +BC1F2AA(G)+BC1K2AA(G)	5,920,000	5,610,000	※ 인테리어 스타일 선택 시 구매 가능  ※ 빌트인 냉장고 품목은 택1이며, 구성 및 디자인/위치/색상 변경 불가  ※ 빌트인 냉장고 가전 판매가격에는 가전 맞춤형 냉장고장 설치 시 증가 금액 포함  ※ 가전 맞춤형 냉장고장은 평형별, 가전별로 디자인 상세가 상이하여 판매 시 별도 안내
		오브제컬렉션 4도어 냉장고 +3도어 김치냉장고 +가전 맞춤형 빌트인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BC4S1AA1(G) +BC3K1AA1(G)	6,790,000	6,660,000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냉장고 +냉동고 +와인냉장고 +가전 맞춤형 빌트인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CL24 +CF24+CW24	45,230,000	44,780,000	
내추럴 모던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 +가전 맞춤형 빌트인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RR40C7(9/8)95AP(Satin) +RZ34C7(9/8)65AP(Satin)+RQ34C7(9/8)45AP(Satin)	6,200,000	5,890,000	
		인피니트 1도어 냉장 +냉동 +와인셀러 +가전 맞춤형 빌트인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RR40C9981APG(Timeless Metal) +RZ38C9891APG(Timeless Metal)+RW33C99B1TFG(Timeless Metal)	16,670,000	16,360,000	
		인피니트 1도어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 +가전 맞춤형 빌트인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RR40C9981APG(Timeless Metal) +RZ38C9891APG(Timeless Metal)+RQ38C9991APG(Timeless Metal)	16,390,000	16,090,000	

소프트 클래식	LG	오브제컬렉션 컨버터블 패키지(오브제 1도어 냉장+1도어 냉동+1도어 김치냉장고) +가전 맞춤형 빌트인 냉장고장(수입푸트라PET)BC1L2AA(G) +BC1F2AA(G)+BC1K2AA(G)	5,920,000	5,610,000
		오브제 컬렉션 4도어냉장고 +3도어 김치냉장고 +가전 맞춤형 빌트인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BC4S1AA1(G) +BC3K1AA1(G)	6,790,000	6,660,000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냉장고 +냉동고 +와인냉장고 +가전 맞춤형 빌트인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CL24 +CF24+CW24	45,230,000	44,780,000
소프트 클래식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 +가전 맞춤형 빌트인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RR40C7(9/8)95AP(Satin) +RZ34C7(9/8)65AP(Satin)+RQ34C7(9/8)45AP(Satin)	6,200,000	5,890,000
		인피니트 1도어 냉장 +냉동 +와인셀러 +가전 맞춤형 빌트인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RR40C9981APG(TimelessMetal) +RZ38C9891APG(TimelessMetal)+RW33C99B1TFG(TimelessMetal)	16,670,000	16,360,000
		인피니트 1도어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 +가전 맞춤형 빌트인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RR40C9981APG(TimelessMetal) +RZ38C9891APG(TimelessMetal)+RQ38C9991APG(TimelessMetal)	16,390,000	16,090,000

■ 추가선택품목(Ⅲ) 납부일정

계약금(10%)	중도금(30%)	잔금(60%)
계약 시	2026.08.25.	입주 시(입주지정기간 내)

■ 추가선택품목(Ⅲ)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비용(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1005-804-820029	디엘이앤씨(주)

※ 상기 계좌와 아파트 공급대금 및 추가선택품목(I), (Ⅱ)와도 공사비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입금 시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비용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각 회차별 납부 및 납부금액에 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Ⅲ) 비용은 상기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주택전시관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3자리), 호수(4자리)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101호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하여야 함)

※ 추가선택품목(Ⅲ) 비용은 추가선택품목(Ⅲ) 계약체결 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은 지정일에 납부하며, 입주 시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또는 판매주체에서 제휴 신용카드사를 통해 결제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합니다.(신용카드결제 서비스 준비 중으로 서비스 제공이 취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결제는 추가선택품목(Ⅲ) 납부시에만 가능하며,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한 제휴 신용카드사 및 제반되는 결제조건, 수수료등에 대한 설명은 추후 안내됩니다.

#### ■ 추가선택품목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시공사 디엘이앤씨(주)와 고객 간 직접계약 및 설치가 진행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금액에는 기본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설치공사는 공개된 품목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위약금 등에 대한 상세내용은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기재하고 체결하오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설치 시점에 이르러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단종(성능 개선, 디자인 변경 등의 사유) 시 동 제조사의 동급 이상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조사의 제품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동급 이상의 타 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 시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으며, 변경 제품을 확정하기 전에 변경 사유 및 내용을 계약자에게 통보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상품 구성, 제품 모델, 디자인(색상포함), 설치 위치, 판매 금액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공정상(발주 및 설치)의 사유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공급 계약이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스타일 선택 옵션은 인테리어 스타일의 통일성을 위하여 개별 분리 판매 및 스타일 간 교차 선택이 불가하며, 스타일별 디자인(색상 포함), 재질 및 구성은 상이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스타일 옵션 선택 시, 스타일과 연계된 개별 품목은 동일한 스타일 범위 내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전, 가구, 조명, 스위치 등)의 디자인(색상 포함), 사양, 위치, 설치 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주방 상판/벽체, 거실 및 복도의 벽체, 마루 등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따라 두께 및 설치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환풍기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욕실 배기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복합환풍기 내 욕실팬 기능 있음)

• 욕실 복합 환풍기는 모드에 따른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의 리모컨은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천장 내부 설비, 등기구의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가전과 붙박이가구 설치 시 설치 부위의 노출되지 않는 가구 천장 및 바닥, 후면 및 측면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격 산정 시 해당하는 설치 비용은 감액하여 책정하였습니다.

• 붙박이리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빌트인가전,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불박이가구 옵션의 가구 수납형태 및 내부 구성과 규격은 주택형별,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가구의 디자인, 내부구성, 하드웨어 상세 등은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침실 내 창호 커튼박스는 불박이장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와의 간섭으로 인해 커튼박스 크기,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불박이장 옵션 선택 시 가려지는 벽체에 설치되는 콘센트 및 통신 포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데스크형 불박이장 선택 시 가구 상판에만 매입형 콘센트가 설치되며 데스크 하부 벽에는 콘센트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니 사용 용도에 적합인지 확인하신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1을 제외한 침실2, 침실3 불박이장(데스크형 포함) 선택 시 스타일과 상관없이 미니멀 스타일로 적용됩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은 자재특성상 시공 이음매가 노출되며, 이음면의 위치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됩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은 인테리어 스타일에 따라 상이한 디자인이 설치되며, 엔지니어드 스톤 개별 선택은 불가 하므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피니티 도어 상부 디테일이나 몰딩 마감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목창호, 인피니티도어에 손끼임 방지 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상세 스펙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디자인월 인피니티 도어 선택 시 욕실2도어 마감재는 디자인월과 패턴이 동일한 인테리어 시트지로 적용됩니다.
- 가구류(시스템가구 등)는 과도한 하중 적재 시 처짐이 생기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스마트홈 연계 조명시스템에 포함된 거실 및 침실의 디밍 제어시스템은 입주 후 조명기구 및 스위치 교체 시 기능의 제한이 발생합니다.
- 스마트홈 연계 조명시스템 선택 시 다운라이트가 소형화되고 거실 직부등이 없으므로 기본형보다 어둡게 느껴질 수 있으며, 조명 특성상 하부에서 직접 광원을 바라볼 경우 눈부심이 있습니다.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홈 연계 조명시스템 선택 시 거실 조명제어 장치(릴레이)가 천장 내부에 설치되며,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현관 팬트리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홈 조명 연계시스템 선택 시 거실 커튼박스 간접조명은 별도의 등박스 없이 커튼박스 내부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스마트홈 조명 연계시스템 선택 시 욕실 내 조명 1개소는 센서 미등 겸용 다운라이트로 변경되며 스위치 점등 시 일반 조명과 동일하지만 스위치 소등 시 센서 기능을 통해 미등이 점등됩니다.
- 스타일 선택 및 가구, 가전 선택 여부에 따라 설치되는 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천장기구(조명포함)의 규격, 수량,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일랜드장 가구에 연결된 전선관 또는 케이블에 의해 위치 이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 삼성 비스포크 및 인피니트, LG 오브제 및 시그니처 선택 시 안내한 바와 같이 세트 구성된 상품으로 판매하며, 상품의 조합, 디자인(색상 포함), 설치 위치, 결합 가구의 구성은 주택형 별로 상이할 수 있고 안내한 내용 외 변경 신청은 불가합니다.
- 삼성 비스포크 및 인피니트, LG 오브제 및 시그니처 설치 시 해당세대가 대칭세대인 경우 구성품목의 설치위치가 좌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삼성 비스포크 및 인피니트, LG 오브제 및 시그니처 설치 시 타입에 따라 결합되는 가구가 상이하며, 공급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전기쿡탑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하는 3구 가스쿡탑은 설치 및 제공되지 않으며, 해당금액은 판매금액에서 차감 정산하였습니다.
- 빌트인 전기쿡탑 선택 유무에 상관없이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기존 위치에 설치됩니다.
- 빌트인 전기오븐은 아일랜드장 선택 시 구매 가능합니다.
- 입주 후 개별 시공하는 품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공사와 무관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본 아파트의 시공사에게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판매가격은 판매시점의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후 원가 변동에 따른 감액 및 증액분은 반영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차액 정산, 감액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사이버 주택전시관 및 홍보물상의 이미지와 실제 입주 시 느끼는 분위기, 마감색상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품질개선을 위하여 사이버 주택전시관(디 버추얼), 홍보물 내용의 마감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라 인접하는 가구, 마감재, 벽체, 몰딩, 걸레받이, 커튼박스, 등기구, 스위치 및 콘센트 등의 위치와 수량, 형태가 홈페이지 홍보물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상품의 경우 제조사 서비스 내용과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 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 발생 시 제조사 보증 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에 한계가 있고, 전품목 전시 불가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체결 시 상세한 설명과 확인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미기재된 내용은 추후 추가선택품목 계약 시 안내 후 계약합니다.

- **일반사항**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으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해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장, PIT 등 공용부분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CS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 본 사업의 공동주택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방식입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된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지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아파트는 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으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사이버주택 전시관 내 게시된 건립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향후 관할관청의 인·허가 협의 결과와 승인조건 이행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준공 도면에 의하여 시공됩니다
- 계약 전 단지 여건(기반시설 위치, 분묘, 송전탑 등 혐오시설 유무, 주변 개발현황, 소음, 조망, 일조 등 단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단지 주변현황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법정오차 범위 내 면적 증감에 대한 별도 정산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계약일 이후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지정·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도시 기반시설 계획 변경 등으로 규제 내용이 강화되어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단지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전시관은 사이버 주택전시관으로 운영되오니 계약 전 사이버 주택전시관 내 게시된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사이버 주택전시관 : www.acro.co.kr)
- 사이버 주택전시관, 분양홍보물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탑승위치 등)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도서에 의하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공사여건 등으로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에 기재된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치수 등은 실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지하주차장 등)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합,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녹지)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 시공 시 사이버 주택전시관에 게시된 투시도 및 배치도와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인접 건물에 의해 조망, 일조 등이 침해될 수 있으니 필히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 자재(수전, 위생기구, 액세서리 및 콘센트)의 설치 위치는 마감 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사이버 주택전시관에 기재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 등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공급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사용검사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 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분양신청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주택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주택전시관에 비치된 설계도서, 마감재료표, 계약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22조에 따라 매도청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초동 1333번지(11.00㎡), 1333-1번지(5.33㎡)의 해당 부지에 대한 매도청구 소송 승소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일부 대지 지분의 소유권 확보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분양계약 시 반드시 이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모집요건을 확보하였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 입주자모집 조건 제1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대지에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가처분·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 등(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해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사업주체가 영 제71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용자를 받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저당권등을 설정한 경우
  2. 저당권등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 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저당권등을 말소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구분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가. 「도로법」 제28조에 따른 구분지상권
    - 나. 「도시철도법」 제12조에 따른 구분지상권
    -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른 구분지상권
- 1단지, 2단지는 기계실, 전기실, 정화조, 빗물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세대 내 투입방식, 부대복리시설 등이 단지별로 각각 설치되어 기본관리비 및 유지관리 비용이 단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실별 용도 및 면적,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구조물의 형태나 주동 입면의 패턴, 색채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택전시관 관련 유의사항

- 본 주택전시관은 사이버 주택전시관(<https://www.acro.co.kr>)으로 운영되오니, 사이버 주택전시관으로 기타 홍보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에 기재된 건립세대의 내부치수는 실제 시공 시 법규상에서 인정하는 범위내의 시공오차 등으로 인하여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시공되는 건축법상의 하향식 피난구는 사이버 주택전시관에 구현된 하향식 피난구와 제품사양 및 힌지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투시도 등의 외부 색채의 세부사항은 본 공사 시 상이할 수 있으며, 각종 심의 및 협의 등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 분양홍보물 등에 기재된 견본세대 CG는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전평형 발코니 확장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 등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 선형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인·허가 및 설계관련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시 3차 실시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나, 현재 진행중인 4차 설계 및 사업인가 변경으로 인하여 향후 설계 관련 내용 및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시 4차 설계 및 사업인가 변경에 대한 관련 동의서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조건 및 시설물계획(설비, 전기, 소방, 토목) 등의 계획 변경으로 인한 공용부 면적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대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일부 타입에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공급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및 실 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옥상구조물,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 캡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도로,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지연될 수 있으며,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2006.1.23. 건설교통부)”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하였습니다.
- 대지경계선 내부의 건축한계선을 따라 설치되는 **보도는 공공보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로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 (세대내부, 외부 및 공용부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 후 최종 인허가 도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103동 28층, 202동 39층에 계획된 스카이클럽아크로와 관련하여, 주변세대에서는 소음, 분진 및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필로티 출입구와 지하주차장 동별 출입구등은 동별로, 코어별로 상이 할 수 있으며, 경미한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외부에 계획된 발코니는 준공 이후 개인적으로 변경시에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의 계단과 슬로프는 향후 동별, 코어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설계변경 내에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공사 중 진입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지반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등의 층고, 지하 주차장레벨, 램프의 위치, 옹벽의 형태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건축물의 외관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되는 등 규모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계약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공동주택의 각동 주동 출입구 및 필로티, 지하 동출입구의 디자인 및 구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동표시, BI, 외부색채, 외관 및 옥탑디자인, 옥탑구조물, 지붕, 입면디자인(전후면 창호와 난간, 발코니 길이 및 높이 등), 조명시설, 담장, 안내시설물, 조경시설물, 동출입구, 외부 난간 형태, 높이 및 단지조경 등은 설계 및 인·허가 조건 이행,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설비의 중계장치는 각동 EPS/TPS 및 환풍 등에 설치되며, 옥외 안테나는 각 동 옥상 및 옥외 조경 구간에 설치됩니다. 위성 안테나의 경우 1단지 103동 옥상, 2단지 201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는 실시설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벽 및 세대간 벽 등 단열설치부위의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 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계획은 본 시공시 관계부서 협의사항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준공시 일괄처리 되며 현재 도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은 관련 법규에 따라 **각동 출입구는 필로티로 형성되며**, 104동은 전체 필로티를 계획하여 이에 따라 저층세대 및 이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당해 시설의 이용으로 인하여 소음 발생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파의 우려가 있는 저층, 고층 일부 세대용 수도 계량기의 동파 방지용 열선 전원은 공용 전기 요금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유아놀이터, 어린이놀이터 등 커뮤니티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조경 식재 및 시설물의 계획은 공간의 형태와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식재 수종,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조건 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 등,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 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스카이클럽아크로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103동, 202동 기준층 EV홀에는 3개층마다 비상용 점검구가 설치되며, 비상 구조활동을 위한 출입문으로 해당동 기준층에서는 스카이클럽아크로 전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외부 창호는 조망권 확보를 위해 유리난간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이사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 이삿짐 및 부피가 큰 짐은 지하주차장 유효높이 및 지하 동출입구 개구부 유효높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단지 209동 주변의 사회복지시설은 2단지 설계 개요 면적으로 산입되어 있으며, 사용승인후 지차제 무상 기부채납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출입구 및 주차장(지상 4대)이 별도 계획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외관, 형태, 마감 방법 및 색상은 인허가 협의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련사항은 사업시행주체 공사 사항으로 공동주택 시공사와는 무관

한 사항입니다.

- 차량출입구 통행 개선을 위하여 차단기가 추가설치, 삭제, 위치 이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도로폭 확대 및 보행로 폭 축소될 수 있습니다.
- 경사지에 위치한 단지 특성상 계단, 경사로 등으로 인해 보행상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세부레벨계획(계단, 경사로, 옹벽, 조경석쌓기, 엘리베이터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돌출부, 개방형 발코니, 부대복리시설 지붕은 배수드레인, 물빠기 구멍 및 선홍통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주동의 평면 및 입면 디자인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외관 특화공사로 인해 설치되는 입면 장식물은 본 공사시 설치위치, 범위, 고정방식, 태양광 모듈, 색상, 디자인, 유리 모듈 등 세부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면특화로 인해 인근 세대의 경우 빛 반사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103,104동 주동 입면 상부와 204동 측벽 벽면과 101,102,103,104,105,106,201,202,203,204,206,207,208,209동 지붕층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며,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수량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됩니다. 입면 및 배면 저층동 지붕층 태양광 패널 설치로 인하여 시야간섭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 환경권 침해 및 빛반사로 인한 빛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분양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등 설계관련 도서 및 면적, 치수 등의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변경인가 등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 46조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함)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니 충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단계 서울시 우수디자인 사항으로 주동입면 다변화를 위해 주택형별 오픈발코니 및 돌출발코니 계획으로 적용 현황에따라 동일 주택형이라도 확장구간 침실 사이즈 및 발코니 설치위치가 세부타입별로 다르게 적용되어 있어 서비스 면적상 차이가 있고, 층별입면 형태가 상이하나, 59, 59A, 59C 타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오픈발코니 및 돌출발코니는 별도의 수전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발코니 내 빗물을 배출하기 위한 우수 슬리브만 설치되며, 빗물이 아닌 오배수 배출 시 하부 세대 및 주동 벽체 오염등에 대한 피해 복구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 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내 비치된 설계도서와 일조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의 단지 구분은 사임당로 북측을 1단지, 남측이 2단지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 본 단지 내에는 **3m이상 공공보행로가 1단지 북측 서운로15길에서 2단지 남측 그랑자이 경계면을 따라 어린이 공원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1,2단지 서측면 경부고속도로 완충녹지 산책로와 단지 내 보행로는 연결되어 있으나, 출입차단 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1단지 북측 서운로 15길은 공공성 확보 방안 요청으로 대지경계선 안쪽 보도 3m외 추가 3m구간을 공개공간으로 외부인의 출입제한이 없는 개방된 공간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허가 과정중 허가청 의견에 따른 것으로 입주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해당 사항은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4동 정면 및 201동 배면, 204동 정면 주변 엘리베이터는 단지 지반층과 완충녹지 단차간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로, 외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입주 이후 본 단지에서 유지관리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형 단차로 인한 수직이동 시설물은 본 공사시 인허가청 협의를 통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1,2단지에는 단지 에너지절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도시가스를 활용한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이 설치되어, 발생하는 전기는 공용부에 공급됩니다.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가동을 위해서는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하며 제반 운영 및 관리비용은 공용요금으로 부과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가동 시 연도를 통한 백연현상 및 진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열 배출 수 기계실 내부 수증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2단지에는 단지 에너지절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지열시스템이 설치되며, 지열 시스템은 부대시설 일부실의 냉난방 시스템의 열원으로 활용되며 별도의 지열 기계실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장비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 및 주변여건 관련 유의사항

- 주변단지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차량전조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소음 및 세대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단지 주변 사업지의 개발 계획에 따라 건축물 준공 시 향, 조망, 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배치 및 층별 향·동·호수별 위치, 주변건물의 신축 등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 동별 제연 환풍, 쓰레기 분리수거장, 경관조명, 공개공간 및 3m공공보행가로, 스카이크럽아크로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 침해 및

- 소음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5동, 205동 주변 조정구간에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 등 각종 분양홍보물의 배치도상에 표현된 일부DA, 제연철클룸, 실외기실 등은 건물에 매립 또는 인접되어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비상차로는 외부 도로와 바로 연결되고 입주 후 진출입구(보행자출입구)에 이동식 볼라드 설치가 계획될 수 있으며, 소방차 및 기타 서비스 차량의 이용시, 별도의 출입관리가 필요합니다.
- 계약자는 세대 각 실 및 발코니 외부에 설치된 유리난간에는 무리하게 힘을 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삿짐 등은 해당 동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이사 중 파손시 원상복구)
- 저층부 및 일부세대는 조정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필로티, 주민운동시설, 수경시설 등이 인접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층 쓰레기 분리수거장, 펌프실, 열교환기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빗물저류조, 정화조, 수영장, 사우나와 인접한 세대는 냄새 등의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빗물처리시설, 저수조, 기계실(열교환실), 정화조, 지열기계실(연료전지실), 펌프실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아파트의 지하 3~4층에는 오수정화조는 단지별로 2개소씩 총 4개소가 설치됩니다. 오수정화조 배기덕트의 위치는 104동, 106동, 205동, 209동 옥상으로 배출되며, 실시설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접세대는 소음 및 냄새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환기를 위하여 실외기실에 전열교환기가 설치됩니다.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에 노출되며, 미관이 저해될수 있고,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연결한 통풍구)는 인도에 인접하여 노출될 수 있으며, 세대에 인접하여 설치시 인접세대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본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세대에 부과됩니다.
- 입주 후 경관조명, 수경시설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스마트홈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과 대지경계에 접한 주변 건물과의 이격 거리를 확인하시고 계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조건 이행,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재활용 분리수거장은 지하2층 주차장에 계획되어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대형 투입구는 지상에 입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계획될 예정으로 주변세대에서는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거 시 소음 및 냄새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소형 투입구는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됩니다.
- 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기계전기실, 기타시설 등은 인허가 조건 이행 및 기계, 소방, 전기, 토목 등 배관, 배선등을 고려하여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레벨에 따라 일부실의 전면부 및 후면부 좌우, 각 호실별 위치에 따라 **경사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부출입구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재활용/일반폐기물 보관소 및 음식물쓰레기 옥외배출구는 준공시 허가기관과 협의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지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레벨은 주택전시관 내 비치된 사업인가변경도서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용부위(E/V홀, 계단실 등)의 평면형태 및 마감 등은 동별·라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출입구 및 저층부는 석재, 도장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면적 및 자재 적용비율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조건 이행 및 현장여건 등에 의해 색채 등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배수판 및 환기시설이 있으나 기후여건에 따라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바닥은 별도의 구배계획이 없으므로 일부구간에는 일시적으로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는 지하2층 램프주변에 집중 배치** 설치되며 급속 및 완속 충전설비(콘센트 포함)가 설치될 예정으로, 동·호수별 지하층 입구와 충전설비간 거리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심의에 의해 적용되었으나, 시공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의 도로, 완충녹지, 어린이공원 등 기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은 인허가 조건에 따라 사업 시행주체가 직접 발주하여 시공 후, 해당관청에 기부채납 예정이며, 공동주택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초동 1333번지(사임당로 북측)93.1596㎡, 서초동 1334번지(사임당로 남측)116.2956㎡는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완화차로(차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분지상권이 설정됩니다. 구분지상권의 설정기간은 사임당로 및 완화차로(차도) 존치시까지이며, 차도로 예정되는 위치 및 면적은 준공 및 확정 측량 이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구분지상권이 설정됩니다.
- 단지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준공은 건축물 준공인가와 별도로 승인이 가능하며, 입주예정일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단지 내 3m이상 공공보행로(1단지 북측 서운로15길에서 2단지 남측 그랑자이 경계면을 따라 어린이 공원까지) 및 출입차단 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완충녹지 산책로(1,2 단지 서측면)와 연결된 보행로, 공개공간(1단지 북측) 조성에 따라 외부인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이로 인해 소음 및 생활권, 환경권이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면(서초대로 70길)은 학교 및 편의시설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차로와 보행로가 계획되어 있으나, 허가 과정중 의견에 따라 외부와 단절되지 않도록 출입차단 시설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서이초등학교 구간도 허가청 의견으로 클데삭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구간은 대지경계선 내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PIT 공간은 인허가조건 이행 및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교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민은 인근 학교에 배정할 계획이나, 사업 추진 현황 변동(취소, 해제), 세대수 변경 등 제반 여건변화로 추진계획 및 정책변화 등에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단지 외부 관련 유의사항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 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주변도로 및 시설물은 교통처리 계획도에 따라 계획되어져 있으며, 준공시 인허가 기관협의 및 현장여건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도로의 일부구간이 주변도로와의 연계성으로 인해 경사질 수 있으며, 계약 전 현장을 확인하셔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설계되는 옹벽 및 단차 시설물은 주변 레벨 현황에 따라 타입 및 설치 구간이 조정 설치될 수 있으며, 입주후 유지 및 관리의 일체의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합니다.
- 계약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 등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서측면은 경부고속도로와 20~30m의 완충녹지를 경계로 인접하여 있어, 101~104동, 201~204동 세대는 도로의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2단지 208,209동 주변 남,북측면은 어린이 공원과 서이초등학교 시설과 접하고 있어 공원 이용 및 학교 방송과 운동장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도로, 공원 등 사업부지내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의 도시개발 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분양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인근 지역 개발 계획으로 향후 공사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는 무관합니다.

#### ■ 단지 내부 여건 유의사항

- 계약 전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시어 비치된 사업계획변경인가 3차 도서의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 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등은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인지합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맞춰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수경시설, 휴게시설 등의 조경 시설물의 크기, 형태는 추후 실시설계 진행에 따라 변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 정차구간 설치를 위해 바닥포장면 관련규정에 따른 도색이 설치되어 미관 저해, 차량 정차 및 시설물 설치에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웬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차로 및 비상차로 구간은 비상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량 주차구획선이 있으며 이곳에 입주민은 주차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단지 내부 및 외부도로는 소방차량 정차가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이로 인해 식재 및 조경마감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는 공공장소, 공개공간, 어린이 놀이터, 필로티, 설비환기구(DA), 발전기실 및 환기구(DA), 전기실, 쓰레기 분리 보관소, 외부계단, 엘리베이터(주동 및 외부), 어린이집, 시니어라운지, 피트니스, 스크린골프라운지, 태양광패널, 옥상 배기구, 보안등 및 조경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빛공해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향후 시공 중 문주, DA, 엘리베이터, 구조물 추가등 외부 시설물들에 의해 용적률 및 건폐율 등은 정비계획 고시변경등을 통해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2층으로 진입하는 지하주차장 출입구 주변 동, 세대로는 차량 및 비상차량(이삿짐, 소방차량 등)의 출입에 의하여 소음 및 불빛으로 인하여, 환경권 침해 및 소음, 분진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단지 103동,104동,105동의 지하층과 2단지 201동,202동,203동,204동,206동 지하층에는 부대복리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주변세대들에서는 부대복리시설 사용으로 인한 환경권 등이 침해 받을 수 있습니다.
- 1단지 104동 필로티 내 비상차로 및 2단지 201동 배면 비상차로 경사구간은 단지내 레벨차로 인하여 1/12 미확보하여 차량 전용으로 계획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이동시 주변 ELEV를 통해 이용하는 것으로 인허가 협의된 사항으로, 사전 충분히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자전거 보관소 등은 설치 위치 및 개소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조, 통풍, 채광, 조망은 동별, 층별, 세대별로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건축계획에 따라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호·라인 및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채광, 환기창의 설치 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도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각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보안등 및 야간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입면 특화를 위하여 단위세대의 창호주변에 돌출장식물, 몰딩 입면 커튼월, 태양광패널, 경관조명 등이 설치되어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세대는 평면도, 입면도 및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차장에는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며, 각 주동 공용홀로부터 접근 및 이용(전기 자동차외 주차금지 등)의 형평성이 맞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 또는 피뢰도선이 설치되며, 일부동 및 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됩니다. 피뢰침에 의한 미관 저해에 따른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에 의해 일부 저층세대에는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저수조 및 펌프실, 그외 기계, 전기실 및 소방피난 시설등은 실 시공 시 도서와 상이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의한 경미한 사업승인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 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의 구조 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 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각 실 크기 및 위치, 창호크기, 재질, 외부마감은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을 위하여 평면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각종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및 지하층 피트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호수별 조망권은 주변 개발 행위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사이버 주택전시관 및 설계도서 등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지하층에 계획된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에 필요한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세대의 미관 저해, 소음/진동 피해,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실외 어린이 놀이터, 휴게소, 주민공동시설, 스카이라운지) 및 수경공간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실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됩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동선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부 침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가구류[신발장,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 가려지는 부위] 및 빌트인가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실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현관/발코니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아파트 옥탑, 지붕, 측면에 의장용 구조물, 공청 및 위생안테나, 피뢰침, 태양광패널 설비등의 시설물, 경관조명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되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설비는 본 공사 시 수량, 위치, 규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태양광 집광판에 의해 세대 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창문에서 태양광 집광판 및 관련 설비가 보일 수 있으며 경관 침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발전에 의한 전기는 주거 공용부 전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태양광 위치는 주동 지붕 및 세대 외벽에 설치되며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시설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민에 의해서 유지 및 관리되며, 일체의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합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용하는 세대수에 따라 일부 승강기 운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동지하, 지하주차장, 기계실, 펌프실, 전기실 등) 벽체 및 천장 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대의 위치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단, 쓰레기분리수거대의 위치 및 규모, 개소는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거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외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및 커튼박스구간 및 깊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는 단지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D/A(설비 환기구)의 노출이 있어, 통행로 등의 사람이 유입되는 공간에 인접한 경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및 E/V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위치 및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의 주출입구가 부대복리시설, 공공개방시설의 출입구와 인접해 있어 통행 및 이용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무인택배보관소는 지하2층에 통합 설치 운영될 예정이며, 1단지는 3개소, 2단지 3개소가 설치됩니다. 우편물 수취함은 각동 지하2층 로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구조 형식 상 지하층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전기 및 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의 전기 및 가스 공급을 위하여 공동주택 부지 내 지상 한국전력공사 개폐기 또는 가스정압기 설치 및 부지 무상제공을 하게 될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내 지상 보행도로는 비상시 소방도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공유시설물(놀이터, 보행로 도로 등)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출차주의 경보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출입구,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기초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 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전에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석재 등 천연자재는 일정한 무늬나 색상이 유사색상으로 공급될 수 있으며, 이는 자재 고유의 물성상 나타나는 사항으로 공사상 잘못에 기인한 사항이 아닙니다.

- **실제 시공시 대지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출입구,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 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전에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환기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일부 차단하는 청정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2회 이상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하시는 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상부 주차장 계획 및 주차램프 위치로 인해 저층부 세대는 소음, 야간 빛공해로 인해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을 분양 카탈로그를 통해 인지하여야 합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지상1층 필로티에 설치되어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101동 북측, 107동 남측, 208동 북측에 위치하며, 유아놀이터는 각 단지별 어린이집 전면에 위치합니다. 그로인한 주변에 소음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4동 필로티에 휴게공간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주변에 위치한 세대는 소음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위치 및 통행 동선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동출입구는 각 동호별로 천장 높이 너비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외와 외부 도로 사이의 경계는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기타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하수도 사용료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도난이나 기물파손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 내 CCTV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부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으며 기존 현황도로여건 등에 따라 교통혼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별 각 1개소 경비실이 주출입구 인근에 설치되며, 주차관제 및 CCTV관련 시스템은 지하1층 종합방재실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시설은 소방법에 근거하여 시스템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 내부 및 주동 출입구에 환기용(제연용)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제연팬룸, 지하 시설용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미세한 진동 및 기류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104동 2호세대 서측, 201동 4호세대 서측 및 204동 2호 서측으로 외부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설계변경에 따라 외부엘리베이터의 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시설로 인한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지상층에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용 구조물, 지하주차장 램프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수 공급을 위한 저수조 및 펌프실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 전기료 등의 비용은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상에서 직접 진입하는 지하2층 주차장 주, 부출입구 차량통행로 높이는 분리수거차량 및 택배차량 진입을 위해 3.0m 적용하였고, 그 외 지하 3~4층 지하주차장의 진입 높이와 주차 통로 높이는 2.3m 적용하였습니다. 주차구획 및 보행구간 높이는 전층 공통 2.1m입니다. 차량 진출입시 유효통과높이 확인 주의가 필요하며, 유효높이 이상의 차량에 의한 훼손은 하자책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자(입주자)는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 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 단열 및 마감재, 샷시,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고층부 세대는 강풍시 옥탑 장식물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옥상 조경으로 인해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음식물쓰레기 세대 내 투입방식 집하시설, 기계실/펌프실/전기실/발전기실/우수처리류조/정화조 등이 설치되며, 해당 시설로 인한 냄새 및 미세한 진동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 **음식물쓰레기(대형) 옥외 투입구의 위치 및 개소는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조합과 협의 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해당시설로 인하여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공공보행통로는 24시간 개방된 공간으로 일반인이 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으며, 단지 내 지상 공공보행통로 구간에는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으며 공공보행통로 이용에 따른 인접세대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1층에 세대정원은 1단지, 2단지 총 29개소가 설치되며, 101동 102호, 103호, 102동 102호, 103호, 103동 101호, 102호, 105동 101호, 103호, 106동 101호, 102호, 107동 101호, 102호, 201동 103호, 202동 101호, 102호, 203동 101호, 102호, 204동 101호, 102호, 205동 101호, 102호, 206동 101호, 102호, 207동 102호, 103호, 208동 102호, 103호, 209동 102호, 103호에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1층 세대정원은 추후 입주자대표회의와 세대정원이 설치되는 세대간에 **별도의 임대료 등을 협의하여 부담하여야 하며, 임의로 철거 및 훼손할 수 없습니다.**
- 1층 세대정원의 관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습니다.
- 세대정원은 해당 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라, 공용면적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공간으로써 별도의 캐노피 등의 낙하물 방지를 위한 구조물이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예정자께서 개별적으로 구조물 변경을 진행할 시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적법한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1층 세대정원내 설치되는 차폐벽, 텃밭·나무의 종류·높이 등 인접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등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층 세대정원은 수분양자(조합 또는 일반분양 포함)의 임대차 계약으로 사용권리 등은 수분양자에게 있으며, 입주인 및 타인 등 출입을 제한합니다.**
- 1층 세대정원에서 취사, 반려동물의 사육 및 동반, 방뇨, 세탁물 건조, 물품의 야적, 도박, 음주흡연, 고성방가, TV시청, 음향기기사용, 미풍양속 저해행위, 악취를 풍기는 행위 등 여타 입주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 1층 세대정원에는 동파 및 법규 이슈 등의 사유로 별도의 급배수 시설은 공급하지 않으니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라며, 입주자의 생활배수 배출로 인하여 옥외 관로등에 문제 발생시 “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등)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심의를 거쳐 설치되므로, 위치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배치 유의사항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공동주택(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혐오시설, 냄새유발시설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대관 인·허가에 따라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비상 차량 동선 등),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실외 어린이놀이터 등)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입주자는 이의 없이 동의하며, 입주자에게 변경사항에 대해 추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조정공간 등은 실 시공 시 대관 인·허가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단지구변 도로 폭, 단지 내 도로 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에 따른 동간거리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비상용 발전기(단지내 보행통로 내) 등 시설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 진동, 연기, 바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사용상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 쓰레기는 단지 내 **별도의 수거시설을 사용하며, 차량을 통한 수거 예정**입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위치 및 통행 동선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 배치 현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1단지 북측면과, 2단지 남측면, 1,2단지 서측면 주변레벨이 본단지 지반층 레벨보다 높은 레벨로되어 있어, 해당구간 경계부는 단차 옹벽 시설물로 계획되어 있고, 일부 세대는 단차 옹벽 시설물이 노출되어 보여질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남서측 방향 102~104동, 202~204동이 높은 동으로 배치되어 있고, 후면 동은 낮은 동으로 계획되어 있고, 주변 기 고층아파트 형성에따라 일부 세대 일조는 불리할 수 있어, 계약전 주택전시관내 비치된 일조검토 보고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3동과 104동 사이 및 202동과 203동 사이 1층과 지하 1층, 103동, 202동 주동 1층은 클럽아크로 및 스카이크럽아크로를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실이 계획되어 있어 인근 동은 소음 및 생활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04동 정면 및 201동 배면, 204동 정면 주변 엘리베이터는 외부인이 이용할 수 있고, 단지 서측면 완충녹지와 단지내 보행로는 출입차단시설이 없는 구조로 보행동선이 연결되어 있어, 주변동은 소음, 생활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하1층 클럽아크로는 계획레벨상 일부 지반층 노출되는 구조로 102동, 106동~107동, 205동~207동 저층 세대는 소음, 빛, 냄새 등으로 생활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동별 관련 유의사항

- 각 세대로 진입하는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홀은 주택전시관에 비치된 사업계획변경인가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는 사항으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각 세대별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이버 주택전시관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경비실 인근 키즈스테이션 인근에 통학차량 정차를 위한 Drop off-zone과 승하차공간이 설치 예정이오니 배치도에서 위치 확인바랍니다.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은 다르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본 시공시 공사여건 등으로 인해 천장고 및 접근 동선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별 송수구 및 상수도소화전 위치가 세대에 인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본 시공시 일부 위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별 외벽에 환기 장치 및 세대 화장실 직배기관련 외부마감캡 설치가 되며 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출입구가 필로티 내에 설치되며, 엘리베이터 홀 공용 사용에 따라 프라이버시 및 소음, 진동 등 생활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배선기구류, 월패드, 통신단자함 및 세대분전반 등의 설치 위치 및 수량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스위치/분전함 등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되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전기, 설비공사상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조명 스위치와 월패드의 성능 개선을 위해 구성 및 디자인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의 줄 눈나누기 및 상세는 변경될 수 있으며, 마감 및 기타 사항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 기기의 전화 통화 기능은 KT 일반전화 가입 시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 전화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지층 주출입구(또는 엘리베이터 홀)에는 환기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내부의 EPS/TPS, PD/AV실의 위치는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PD, EPS, TPS실 등 내측면에는 별도의 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각 동의 세대는 보안등 및 경관조명 등(각종 조명)에 의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동의 층변화세대의 공용 PD 및 AV실에는 배관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요금은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본 공사 시 주동 옥상난간대의 디테일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 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 영구배수 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3동 1층, 202동 1층에는 클럽아크로 및 스카이크럽아크로 출입구가 형성되어 인근세대는 소음 및 생활권, 환경권이 침해될수 있습니다.
- **103동, 104동, 201동~204동 지하1층은 외부 진입층에서 주동 진입시 클럽아크로 시설을 통하여 진입 가능하며, 지상 1층은 진입층 레벨에서 높은 레벨에 계획되어, 비상차로 또는 클럽아크로 엘리베이터, 계단실을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 103동, 202동 지하 2층은 지하주차장에서 주동 진입시 주변 커뮤니티 시설로 인해 다소 긴 우회 동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103동, 104동, 201동~204동 지하 2층 주동 주변으로 커뮤니티 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지하주차장 주차 이용 동선이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 102동, 103동, 104동, 105동, 201동, 202동, 206동 1층에는 허가과정 허가청 의견으로 클럽아크로 및 근로자 휴게소 채광을 개선하기 위한 선근이 계획되어 있어, 이로 인한 소음 및 냄새 등으로 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04동 1호 1층 하부에는 휴게공간이 형성되어 인접한 상부세대는 소음 등으로 생활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05~107동 1호 저층 세대는 외부 도로와 인접하여, 이로 인한 차량 전조등 및 생활 소음 등으로 생활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07동, 201동, 205동, 209동 저층세대는 단지내 주, 부출입구와 인접하여 차량 전조등 및 차량 소음 등으로 생활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205동 지하층에는 전기실, 기계실이 배치되어 지상층으로 DA가 세대 인접 돌출계획되어, 저층세대는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으로 생활권, 환경권이 침해될수 있습니다.
- 207동 1층 주변 그랑자이 방향 3m 공공보행가로는 **현황레벨상 단지 지반층 레벨보다 높은 레벨로 형성되어**, 저층세대는 이로인한 소음 및 시야 간섭 등으로 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208동 피로티 1층 내부에는 서울시 우수디자인 사항으로 지하 1층과 오픈 구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209동 1호, 4호 1층 피로티와 어린이 공원은 사이는 허가과정 허가청 의견으로 어린이 공원과 연결되는 보행 동선이 계획되어 있으나, 인허가 협의를 통해 위치는 변경 조정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101-104동, 107동, 201동-205동, 209동 주동 측벽 및 옥상에는 외장 장식물이 설치되어 바람의 영향 및 우천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104동, 202동-204동, 208,209동 주동 입면 및 옥상 및 107동, 205동, 209동 주동 측벽에는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인접동은 경관조명에 따른 빛으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04동, 203동 옥상층에는 소방용 고가수조가 설치되어 있어 하부층은 진동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동, 203동 옥상층에는 인명구조용 헬리포트가 설치되어, 추후 사용시 헬리콥터 접근으로 진동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3동 28층, 202동 39층은 스카이크럽아크로가 계획되어 있어, 직하층 및 주변 세대는 부대시설 이용에따른 진동 및 소음, 빛산란 등에따른 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동 필로티 하부에는 부대시설 및 관리사무소 냉난방을 위한 실외기실이 계획되어 장비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단지 104동, 2단지 202동 옥상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배기연도가 설치되어 시스템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단위세대 관련 유의사항

- 단위세대 실외기실에는 인접세대로 피난을 위한 건축법상의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됩니다. 다만, 각 동별 최하층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외부로 피난을 위한 완강기가 설치되어 비상 시 실외기 루버 오픈형 그릴창을 통해 피난이 가능합니다.
- 각 동별 최하층 세대의 실외기실 루버는 완강기를 통한 대피를 위하여 상부 루버 오픈형 그릴창이 설치되어 상부 세대와 디자인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 **천장높이는 2.4m으로 시공됩니다.**
- 하향식피난구는 비상시 사용을 위한 것으로 피난에 방해되는 물건 등을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실외기실 출입문을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과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의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타입의 평면이라도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시공되며, 층별, 세대별 실제 느끼는 소음과 진동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 발코니(개방형 발코니 제외)에는 수전 및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며 해당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바랍니다.
- 기본 제공되는 계약용량 및 분전설비 외에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하며, 시공 부주의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승강기 출입문과 세대 현관문이 마주하고 있는 세대 등에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의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실측 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승강기의 경우 시공 과정에서 디자인 및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센터, 관리사무소 등)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일조, 진동에 의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바랍니다.
- 렌지후드 상부장은 수납 목적이 아닌 후드 장비 및 자동식 소화기 등이 설치되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 벽체, 장식 커튼월 입면 또는 계단실 등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도 있으며, 가스공급사의 가스공급압력에 따라 가스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주방 천정, 벽체 또는 주방가구 상부장 내부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되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팬트리, 드레스룸 등 **창이 없는 세대는 해당실 환기를 위해 전열교환기에서 연결되는 배기 디퓨저가 설치되어 환기 필요시 전열교환기 가동이 필요합니다.**
- **외기에 면해있지 않은 (외부 창이 없는) 다용도실은 해당 실의 환기를 위하여 별도의 천정형 배기팬이 설치되며, 주기적인 배기팬 가동이 필요합니다.**
- 59A타입 및 발코니(보조주방) 옵션가구 선택에 따라 일부타입은 건조기와 세탁기를 나란히 배치할 수 없으며, 2단 설치만 가능하므로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환기 장치로 인해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수량은 성능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팬트리 또는 발코니 내 거실 조명제어 장치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일부 세대(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 및 복도에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세대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침실 내 노출된 장소에 설치되며 타입마다 위치가 상이할 수 있고, 본 공사 시 설치되는 제품의 위치 및 디자인은 사이버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불박이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상부장, 하부장 등), 빌트인가전,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주방가구 내부 수납장 하부 천정면의 마감판은 설치되지 않으며, 주방 상판 하부면의 노출이 발생하며, 이는 하자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세대내 천정몰딩은 하자예방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도배홈이 설치되며 사이버 주택전시관 디자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정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가 설치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됩니다.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신발장, 창고장 또는 침실 불박이장의 하부 또는 배면, 침실 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가 세대내 실외기실에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외기실 그릴창 미개방 가동시 냉방기기 고장,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릴창 근처에 물건 적치 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저하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 등)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위세대 실별 가구의 실사이즈는 마감, 단열재 두께의 차이 등으로 도면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내부구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유리난간의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 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빨래 건조기 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택형에 따라 창호의 크기 및 위치 방향, 마감자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이버 주택전시관을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공사여건 및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거실, 복도, 침실 등의 벽체마감(마감두께 등)으로 인하여 본 아파트의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일부 콘센트는 2구 중 1구가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로 설치되며, 의류관리기 등 고용량 가전 사용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 사용시 전력사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타입 및 평면에 따라 조명, 스위치, 콘센트 등의 배치 및 수량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시공되었으며, 층별, 세대별 실제 느끼는 소음과 진동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조경계획은 인·허가 과정,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시 확정됩니다.
- 단위세대 주방 및 화장실의 배기 방식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별도의 공동 배기덕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화장실의 배기팬은 천정 노출형 팬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세대 내 구조, 실내기 선택 수량, 운전 조건 또는 실내 환경 등에 따라 냉방 사각지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월 마감은 부위별로 패턴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디자인월 마감은 자재 특성상 시공 이음매가 노출될 수 있고, 이음면의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배기팬은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주방에 설치되는 음식물쓰레기 세대 내 투입방식의 하부 가구장에는 밸브 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므로 수납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투입 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내 바닥 단차의 경우 타입별 및 옵션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에는 기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발코니의 난간대는 향후 디자인 및 시공성,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부부욕실과 공용욕실의 배수 배관은 층상배관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부세대 영향이 없는 **각 동별 최하층 세대는 층하배관으로** 시공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 문의 높이는 인테리어 계획의 사유로 사업승인 설계도서와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 높이는 바닥 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축공사에 따른 줄눈나누기, 마감 및 기타 사항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난방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문틀이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목창호에 손끼임 방지 장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위세대 욕실 벽 및 바닥, 현관바닥, 주방 벽, 발코니 바닥 등의 타일 나누기는 사이버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중 인화검용 호이스트(리프트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Mock up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샘플하우스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됩니다.
- 발코니(보조주방) 창호는 사업시행주체 요청에 따라 사이버 주택전시관에 반영된 창호로 설계변경 후 시공예정입니다.

#### ■ 주민공동시설 관련 유의사항

-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복도 등의 공용부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일부 부대복리시설, 공공개방시설의 배수는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배수펌프를 통하여 배수 후 메인 배수관에 연결될 수 있으며 배수펌프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 부대복리시설은 "갑"과 "병"이 협의한 공사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항목을 제외한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저수조, 우수저류조, 정화조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각동 출입구 계시판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단지 배치 상 자전거 보관소, DA(기계·전기실·발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및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연기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인 대상으로 영업하고자 할 경우 별도 시스템 구성 및 신고절차가 필요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에 적용되는 공기청정형 냉난방기의 경우 실별 시스템에 따라 일부 구간은 일반형 냉난방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선근 구역에는 냉난방 시스템 가동을 위한 설비(실외기 등), 부대복리시설 환기용 그릴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작동 시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부대복리시설에는 신재생에너지원인 지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일부 시설에는 일반형 EHP가 적용됩니다. 연료전지실, 지열기계실 운영 시 연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규모 및 배치형태, 창호의 크기 및 위치, 기능,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내외부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인 주민공동시설은 피트니스, 스크린골프라운지, 프라이빗스터디룸(남/여), 어린이집, 시니어라운지, 생활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되며,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운영 및 관리 등 구체적인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에 대해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단지 설계 상 부대복리시설은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각 시설별 해당 부대복리시설의 면적은 각 해당 시설의 기타공용 면적에 분배되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된 조경시설은 인계 후 안전, 보건, 관리 등은 관리주체의 의무이며, 관리소홀로 인한 냄새, 오염수, 해충, 고사,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부주의로 인한 조경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의 책임입니다.
- 올데이다이닝(케이타링 서비스가능), 스카이라운지 운영시 소음, 매연, 냄새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부대복리시설 배수는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배수펌프를 통하여 배수후 메인 배수관에 연결될 수 있으며, 배수펌프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센터, 시니어 라운지,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부대시설 선근 구역에는 부대시설 환기용 그릴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작동 시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은 공간개선 및 본 시공시 공사여건 등으로 인해 천장고 및 접근 구획, 창호크기, 위치, 재질, 외부 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실외기실 위치는 본 시공시 세부 용량 검토 등을 통해 위치 변경 및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적절한 설계 변경처리 절차를 통해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유시설 유의사항

- 단지 내 공용 시설물, 지형 단차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시설물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환경권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또는 차량 및 보행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4층 주차장 바닥 및 램프 바닥은 줄눈이 시공되며, 해당 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지하 주차장 주차구획 배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주차 후 이동 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휨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휨룸 및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에 인접한 세대는 기계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세대창고는 조합세대만 계획되어 있으며, 일반분양세대는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서에 명기되어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단지와 2단지 **지하 4층에는 각 1개소씩 펜트하우스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됩니다. 해당 주차공간은 해당 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라, 공용면적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공간으로써 추후 입주자 대표회의와 세대 간에 **별도의 임대료 등을 협의하여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 공용부분인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옥상, 전실 및 홀 등은 주거 공용부분으로 개인적으로 전용화하여 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질조사 등을 통해 지하수위가 높은 경우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영구배수공법을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관리비용(배수펌프 사용에 따른 전기료, 하수도 사용료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 조례에 따라 단지에서 배출되는 영구배수는 계량 후 배출되며, 일정량 초과 배출시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로수로 인한 조망 등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 외부에 블라드, 가로등 보차로 구분용 휨스, 각종 계시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재난, 안전, 소방과 관련하여 관련 법에 따라 시공 시에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구역은 기본 및 확장형 주차 구획으로 계획되었으며, 설계변경 및 현장여건에 따라 주차면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주택형의 경우라도 지하 출입구와 지하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기 바랍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의한 과태료 부과/민원(각종 분쟁 등)은 당사와 관련이 없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시공 시 단지 주변의 레벨 변경에 따른 단지 내 레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료전지실 및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은 공용관리비로 부과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단지의 103동과 104동 사이에 위치한 클럽아크로의 지하2층에는 피트니스, G.X룸, 필라테스룸, P.T룸, 스크린골프라운지, 스크린골프룸, 건식사우나(남/여), 프라이빗스터디룸(남/여), 프라이빗오피스룸, 스터디룸, 레슨룸, 그랜드라이브러리(작은도서관)이 있으며, 지하1층에는 어린이집, 시니어라운지, 키즈라운지, 멀티룸(주민회의실), 생활지원센터, 방재실, MDF실이 있습니다. 103동 지상 28층에는 스카이크럽아크로 인 스카이라운지가 있으며, 또한, 104동과 107동 사이의 문주에는 경비실과 키즈스테이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2단지의 201동, 202동, 203동, 204동 사이에 위치한 클럽아크로의 지하1층에는 키즈라운지, 다함께돌봄센터, 올데이다이닝(작은도서관), 프라이빗다이닝룸, 피트니스, G.X룸, 필라테스룸, P.T룸, 사우나(남/여), 실내수영장, 미니집, 스포츠코트, 프라이빗오피스룸, 멀티룸(주민회의실), 생활지원센터, 방재실, MDF실, 어린이집, 시니어라운지가 있고, 지하2층에는 스크린골프라운지, 비거리골프룸, 에듀라운지, 프라이빗스터디룸(남/여)가 있습니다. 202동 지상 39층 스카이크럽아크로에는 스카이라운지가, 201동 205동에 인접한 문주에는 경비실과 키즈스테이션이 있습니다.
- 지하2층에 계획되는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의 상부에는 전기차 화재시 연기배출을 위한 덕트 및 팬이 설치되어 가동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계획중인 기계실, 전기실, 정화조, 빗물이용시설, 음식물쓰레기 세대 내 투입방식 집하시설등의 유틸리티 시설은 장비 효율등을 고려하여 위치 및 면적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공용부 천정에 가스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안전공사 검토 결과에 따라 배관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아파트 총 1,836대수가 적용되었으며, 단지별, 동별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동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 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에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전 주택전시관내 배치된 사업계획변경인가 3차 도서로 계획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 주차장 주차면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주차 구획선은 도서상의 실선을 기준으로 구획되어 있고, 주차구획 표기시 좌,우측 부분에 편차가 생길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용시설물 위치 및 개소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지하층(동지하, 지하주차장, 펌프실, 전기실 등) 벽체 및 천정, 바닥 마감 및 레벨 및 구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차량 출입구 및 램프 지붕의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단지 기계실은 입주후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해 209동에서 205동 주변으로 위치 변경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일부 주차면 위치이동 예정입니다. 해당 사항은 사업 주체 및 허가청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설계변경 예정으로, 세부 협의과정을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입주 관련 유의사항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엔지니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 하는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의 살수반경 기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입주예정시기와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도로) 등의 준공시기는 상이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준공인가(준공허가 전 사용허가 포함)시에만 입주가 가능하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준공 후 단지 내에 일부 공간을 입주지원센터(가칭), 및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등) 요구, 시설 이전/축소 등을 계약자(또는 입주민)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요구할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바닥 마감재 자재 특성상 찌흙, 벗겨짐 등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당 현장의 설치되는 수전의 물이 싱크대 및 하부장 외부로 물이 떨어지게 되면 마루 손상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하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감자재 업체의 문제(생산차질, 단종, 부도 등)로 입주 이후 AS시 기존 시공되어있는 마감재와 다른 대체품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세대 내부 구조 벽체 임의 제거 및 PD주변 벽체 훼손, PIT의 불법 확장은 불가하며, 이로 인한 원상복구 책임 및 하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 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 및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 발생 시 제조자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주택전시관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1(아크로 드 서초 주택전시관)

■ 사이버 주택전시관 : <https://www.acro.co.kr>

■ 분양문의 : 02-571-1162

※ 주택전시관은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사이버 주택전시관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 및 이 공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